

古文書研究, 제26호
2005. 2, 71-121쪽

現存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新발견 1666년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斷片

林 學 成*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17세기 중엽 濟州牧의 住民 양상 |
| II. 16·17세기 戸籍大帳의 현황과 특징들 | V. 맷음말 |
| III. 1666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斷片 | |

요약

이 연구는 1666년도 濟州牧 호적대장의 寫本 斷片을 통하여, 조선 중기 제주도 호적 자료의 특징 및 주민의 거주 양태를 살펴본 것이다. 이 자료는 호적대장에서 落張된 원본이 아니라 1908년 호적 원본을 보고 그대로 謄寫한 것이기는 하나, 그간 제주 지역의 호적대장이 전혀 발견된 바 없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한편 제주목 호적대장 단편의 분석을 계기로 16·17세기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五家作統法’의 遵行으로 조선시대의 호적제도가 틀을 잡아가게 되는 1675년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들을 종합하면, 주민의 실재 내용 및 기재 양식·용례 등이 생생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기재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1675년 이후에 작성된 호적대장에서는 보기 드문 양상들이었다.

끝으로, 1666년 제주목 호적대장에 등재된 ‘戶’는 대략 10~20명 내외 규모의 食口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의 ‘家’(自然家)·‘家族’이 결합한 구조, 이른바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家共同體’ 혹은 ‘世帶共同體’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 16·17세기 戶籍大帳, 濟州牧 호적대장 斷片, 五家作統法, ‘戶’, 白丁, 百姓, 挾人·挾戶, 빈집[虛戶], 戶奴·戶婢



I. 머리말

필자는 2004년 한국역사민속학회 하계 워크샵(8월 27일-28일) 참석차 제주도에 들렀다가 국립제주박물관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千載一遇’라 하였던가? 때마침 박물관에서는 기증유물특별전(‘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心齋 金錫翼－’)이 개최되고 있었으며, 기증유물 중 제주도(濟州牧)에서 작성된 조선시대 戶籍大帳의 落張 斷片(실상은 謄寫本)이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 지역(즉, 조선시대의 濟州牧·旌義縣·大靜縣)의 ‘戶籍中草’는 상당량이 발굴·소개된 바 있으나, 이상하리만치 ‘中草’ 단계를 거친 최종 완성본인 호적대장은 단 1책도 발견된 바 없었기에, 필자는 제주도 지역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이 발견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同時기 同지역의 이들 두 호적자료가 혼존한다면, 호적대장의 작성과정 및 戶·口 등재의 실상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지 않아 究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帳冊이 아닐 뿐더러 원본을 謄寫한 것에 불과했지만, 자료를 目覩하게 된 감동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자료를 展示臺에서 꺼내어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그 자료가 수록된 전시도록만을 구입한 채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귀가하자마자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판독·분석에 착수하였고, 이 결과를 韓國古文書學會 10월 연구 모임에서 발표(‘古文書講讀’)하여 필자가 판독하지 못한 몇몇 글자를 판독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판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았고 이 未濟는 자료의 기증자, 즉 자료에 등재된 인물의 후손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 글은 후손¹⁾을 찾아뵙고 인터뷰 및 族譜 열람을 마친 후 완성할 수 있었다. 후손은 바로 제주박물관 특별전의 대상 인물인 心齋선생의 子弟로 濟州島史에 대한 탁견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본 濟州牧戶籍大帳 斷片이 원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원본을 考閱하고 ‘謄寫’한 것이라는 설명과, 이 자료 외에도 몇 건이 더 등사되었다는 주요 정보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좀 더 상세한 설명은 후술함).

한편, 본 제주목호적대장 단편을 다루면서 이번 기회에 16·17세기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현황뿐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지닌 특징도 함께 정리·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新발견 제주도 호적대장(斷片) 및 現存 16·17세기 호적대장에 대

1) 金啓淵 선생(字 乃心. 本 光山. 1935년生: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거주).

– 인터뷰 일시: 2005년 1월 5일 11:40~14:00 / 장소: 金啓淵 선생宅.

초면에 無禮하였을 客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터뷰에 자상하게 응해주신 金啓淵 선생께 紙面을
빌어 감사드린다.

한 간략한 해제와 아울러, 호적자료를 통해 본 17세기 중엽 제주도의 주민 양상을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추후 호적대장, 더 나아가 호적 관련 古文書(戸口單子와 準戸口 등) 자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16·17세기 戸籍大帳의 현황과 특징들

1. 16·17세기에 작성된 現存 호적대장들

조선왕조 때 작성된 호적대장(1896년 9월 이후에 작성된 ‘新式戸籍’ 제외) 가운데 현존하는 것(中草 포함)은 550여 책 정도로 조사된다.²⁾ 이 가운데 16·17세기의 호적대장은 斷片을 포함하여 전체의 5%(26건) 정도인 소량이다.³⁾ 또한 조선왕조에 있어서 ‘五家作統法’ 이 제대로 遵行되기 시작하는 肅宗 원년(1675) 9월⁴⁾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에 국한할 경우 2%(11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戸口單子나 準戸口 등 戸籍류 古文書자료의 현황에서도 유사함을 보인다. 이는 바로 18세기 이전에 작성된, 더군다나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작성된 호적자료가 매우 희소함을 말해 준다. 참고로 16세기의 자료로는 1528년에 安東府에서 작성된 호적대장 斷片이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하다.⁵⁾

2) 林學成, 『17·18세기 丹城地域 住民의 身分變動에 관한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85-286쪽의 <부표> 참조.

3) 이밖에 규장각에 소장된 ‘江原道浪川縣戸籍大帳’ 낙장 일부(No.古大 4258-2)가 1660년에 작성된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繢集(吏部 2)』,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155쪽). 그러나 五家作統法에 따라 家戶가 편제되고 있는 점과 등재 인물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이 자료는 1720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4) 『備邊司詹錄』 31책, 肅宗 원년 9월 26일조 ; 『肅宗實錄』 권4, 원년 9월 辛亥條.

5) 이 자료는 1995년 李榮薰·安承俊 선생에 의해 발굴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1528年 安東府 府北周村 戸籍斷片』, 『古文書研究』 8, 1996).

〈표 1〉 조선왕조 16·17세기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현황

| 지역 式年 | 1528 | 1606 | 1609 | 1630 | 1639 | 1663 | 1666 | 1672 | 1678 | 1681 | 1684 | 1687 | 1690 | 1696 | 1699 | 계 |
|--------------|------|------|------|------|------|------|------|------|------|------|------|------|------|------|------|----|
| 安東府 府北 周村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山陰縣 | - | 1奎 | - | 1奎 | - | - | - | - | - | - | - | - | - | - | - | 2 |
| 丹城縣 | - | (1)奎 | - | - | - | - | - | - | 1 | - | - | - | - | - | - | 2 |
| 蔚山府 | - | - | 1奎 | - | - | - | - | 1奎 | - | - | 2奎 | 1奎 | - | - | 1奎 | 6 |
| 彥陽縣 | - | - | (1)奎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海南縣 | - | - | - | - | <1>奎 | - | - | - | - | - | - | - | - | - | - | 1 |
| 漢城府 北部 | - | - | - | - | - | 1奎 | - | - | - | - | - | - | - | - | - | 1 |
| 濟州牧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1 |
| 金化縣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
| 大丘府 | - | - | - | - | - | - | - | - | - | 1奎 | 2奎 | 1奎 | 2奎 | 1奎 | - | 7 |
| 尙州牧 | - | - | - | - | - | - | - | - | - | 1奎 | - | - | - | - | 1奎 | 2 |
| 伊川府 | - | - | - | - | - | - | - | - | - | - | <1>奎 | - | - | - | - | 1 |
| 계 | 1 | 2 | 2 | 1 | 1 | 1 | 1 | 2 | 1 | 2 | 4 | 3 | 2 | 1 | 2 | 26 |

비고) ① 아라비아 數字는 冊數를 뜻하며, []로 표기한 것은 날장 斷片만 남은 것을, <>로 표기한 것은 落張을 편철한 것임을 뜻함.

② ()로 표기한 것은 任縣으로 併屬되어 인근 군현의 호적에 合錄된 것을 뜻함. 즉, 1606년도 丹城戶籍은 山陰戶籍에, 그리고 1609년도 彥陽戶籍은 蔚山戶籍에 각기 합록되어 있음.

③ '奎' 표기 자료는 서울대 규장각도서관 소장임을 뜻하며. 기타 자료의 소장처는 아래와 같음.

- 1528년도 安東府 府北 周村 戶籍大帳 斷片 ↪ 서울역사박물관
- 1666년도 濟州牧 戶籍大帳 斷片 ↪ 국립제주박물관
- 1672년도 金化縣 戶籍大帳 ↪ 미국 하바드大 엔칭도서관
- 1678년도 丹城縣 戶籍大帳 ↪ 경상대학교 도서관

지역별로는 역시 慶尙道(大丘府·蔚山府·安東府·尙州牧·山陰縣·丹城縣·彥陽縣)의 것이 21건으로 대부분(80%)을 차지하고, 全羅道(海南縣과 濟州牧)가 2건, 江原道(伊川府와 金化縣)가 2건, 그리고 漢城府 北部 城外의 것이 1건 등이다.

한편 現存 제주도 지역의 조선왕조 호적은 약 130여 책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두 '中草'이다. 시기적으로는 18세기 말(自 1786년) 이후이며, 지역적으로는 濟州牧과 旌義縣의 것 일부를 제외하고 大靜縣의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⁶⁾

6) 제주도 지역의 戶籍中草 현황에 대해서는 梁晉碩, 「解題」, 『濟州河源里戶籍中草(1)』,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2 ; 高昌錫, 「解題」,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I)』,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 金東栓,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高昌錫, 「解題」,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따라서 이번에 소개 · 분석하는 濟州牧호적대장 단편은 비록 謄寫本이라는 자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제주지역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의 原本 모습을 알려 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 그리고 원본이 오가작통법을 준행하기 이전인 顯宗 7년 (1666년 · 丙午式年)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五家作統法' 遵行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특징들

조선왕조는 개창과 더불어 人民에 대한 파악에 주력하고자 戶籍制를 비롯하여 五家作統法와 號牌法 등을 시행하였다. 호적제의 경우 호적대장이 3년마다 작성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별다른 무리 없이 遵行된 반면, 호적제를 보완 · 강화하는 수단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던 오가작통법과 호폐법은 여러 차례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었다.⁷⁾

호폐법과 함께 오가작통법이 강화되어 제대로 준행되는 시기는 肅宗 원년(1675) 부터이다. 이후 新호적법에 따라 '十家作統'이 전면 시행되는 建陽 원년(1896)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호적대장은 철저하게 '五家作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각 家戶에 統 · 戶의 No.를 부여 · 기재하다 보니 '戶'가 바뀔 때마다 別行으로 起頭하여 등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1675년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들은 통 · 호 No.의 기재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戶'를 별행 起頭하기도 하고, 구별 없이 連書하기도 하는 등 각 자료마다 그 등재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들의 분석을 통하여 각 자료마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이에 해당되는 호적대장(斷片 포함)은 11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목호적대장 단편은 별도의 章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할 것이기에 10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1) 1528년 慶尙道 '安東府府北周村戶籍'⁸⁾ 斷片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997 ; 金東栓,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2004 등 참조.

7) 조선왕조의 오가작통제와 호폐법의 치폐 과정에 대해서는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 研究(改訂版)』,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32-153쪽 ; 李光麟, 「號牌考-그 實施變遷을 中心으로 -」,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 國學論叢』, 1955 ; 申正熙, 「五家作統法小考」, 『大丘史學』 12 · 13合, 1977 ; 韓榮國, 「호구정책의 강화」, 『한국사』 34<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210-222쪽 등 참조.

8) 이 戶籍大帳 斷片에 대해서는 李榮薰 · 安承俊의 연구(주 5)가 있다. 이에서는 이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물론 본 자료의 제목(假題)도 위 선행 연구에서命名한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바, 조선왕조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작성 시기는 中宗 23년(1528·戊子式·嘉靖 7)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16세기 호적이 되겠다.

현재 자료의 소장처는 서울역사박물관이지만, 1995년 5월 李榮薰·安承俊 두 선생에 의해 자료가 발굴될 당시에는 安東 周村의 眞城李氏 宗宅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료는 帳冊 상태가 아닌 호적대장의 날장 단편(가로 81×세로 66cm)으로 진성이씨가의 先祖(李壇) 家戶가 등재되었기에 종택에서 자료를 소중하게 보관한 듯하다. 아마도 한말·일제 초, 舊호적을 일괄 廢棄하는 과정에서 후손이 이 단편 부분만을 뜯어내어 소장해 왔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자료에는 '別侍衛果毅校尉'가 직역인 李壇(61세. 本眞寶)의 가호를 비롯하여 모두 6戶가 등재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특징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오가작통법이 준행되기 이전의 호적이기에 統·戶의 No. 기재 없이 각 호를 連書하고 있다.
- ② 家戶가 바뀔 때마다 '戶'字를 크고 진하게 씀으로서 구분하고 있다.
- ③ 戶首와 처의 경우는 四祖를, 率奴의 妻(良女·新白丁女)와 率雇工 등의 경우는 二祖(父와 外祖)만을 밝히고 있는데, 左右 細字雙行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노비는 모두 世系를 기재하지 않았다.
- ④ 호적의 註記 사항에 '節現'(이번[節: '지위']에 새로 나타남[現])과 '作不納'(문서[作: '질'], 즉 이 경우는 호구단자를 제출하지 않음[不納]) 등을 기재하고 있다.
 - ☞ 사례 : "...奴從同年貳拾貳節現妻良女銀非年貳拾肆本英陽父百姓南甘金外(右行細字-인용자註)/祖不知已上作不納(左行細字-인용자註)..."(자료의 19-20행)
- ⑤ 고려~조선 전기에 존재한 특정 신분층인 '百姓'(仰役百姓, 雇工百姓, 仰役雇工百姓 등)과 '新白丁' 등의 役名⁹⁾이 나타나고 있다.
 - ☞ 사례 : "...仰役百姓禹致孫年貳拾玖本榮川父永仇知外祖百姓(右行細字)/權守本安東(左行細字)..."(자료의 15-16행)
 - ☞ 사례 : "...戶新白丁朱屎年伍拾柒本安東父新白丁元山祖元龍曾祖加(右行細字)/都致外祖新白丁閑大本安東(左行細字)妻新白丁女列德年肆拾陸本豐基父新白丁未應失祖新白丁上左曾祖(右行細字)/永已外祖新白丁柳販本安東(左行細字)..."(자료의 23-25행)

따라서, 상기 특징 ⑤를 주목하여 볼 때, 이 자료에 더하여百姓·白丁·新白丁 등이 나타나는 호적자료를 수집·보완한다면 조선시대의 이들 특정 신분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

9) 엄밀히 말하자면 '百姓'과 '白丁'은 국가가 인민을 파악하는 수단인 '國役'의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뚜렷한 국역이 없는 이들을 호적에 편제시키는 과정에서 붙여진 임시방편적 凡稱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개념지을만한 마땅한 용어를 발견할 수 없기에 광의로 役名이라 표현한다.

움이 되리라 본다.¹⁰⁾

2) 1606년 慶尙道山陰縣戶籍大帳¹¹⁾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No.14820】

임진왜란 직후인 宣祖 39년(1606 · 丙午式 · 萬曆 34) 경상도 山陰縣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이다. 帳冊으로 남은 호적 가운데 最古의 것이라 일찍부터 연구자의 관심과 분석이 있어 왔다.¹²⁾

10) 조선시대의 ‘百姓’ · ‘(新)白丁’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성과는 찾기 어렵다. 다만, 최근 李俊九 선생의 기획적 考究에 의해 白丁의 존재 양태가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있기는 하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姜萬吉, 「鮮初白丁考」, 『史學研究』 18, 1968 ; 文晶永, 「高麗末 · 朝鮮初 白丁의 身分과 差役」, 『韓國史論』 26, 서울대 국사학과, 1991 ; 李俊九, 「朝鮮後期 白丁의 存在樣相 - 大邱府 西上面 路下里 白丁部落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53, 1997 ; 李俊九, 「朝鮮前期 白丁의 犯罪相과 齊民化 施策」, 『大丘史學』 56, 1998 ; 李俊九, 「朝鮮後期 慶尙道 丹城地域 白丁의 存在樣相 - 丹城帳籍을 중심으로 -」, 『朝鮮史研究』 7, 조선사연구회, 1998 ; 한희숙, 「조선 太宗 · 世宗代 白丁의 생활상과 도적 활동」, 『韓國史學報』 6, 고려사학회, 1999 ; 李俊九, 「조선중기 編戶白丁의 존재와 그 성격」,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2000a ; 李俊九, 「조선시대 白丁의 前身 楊水尺, 才人 · 禾尺, 韓靼 - 그 내력과 殖의 모습을 중심으로 -」, 『朝鮮史研究』 9, 2000b ; 李俊九, 「조선후기 마을을 이루고 산 고리백정의 존재 양상 - 大丘府 戶口帳籍을 중심으로 -」, 『朝鮮史研究』 10, 2001 ; 李俊九, 「조선전기 白丁의 習俗과 사회 · 경제적 처지」, 『朝鮮의 政治와 社會』, 집문당, 2002 ; 李俊九, 「조선전기 白丁의 起防과 軍役與否에 관한 검토」, 『仁荷史學』 10, 인하역사학회, 2003 [이상, 白丁 연구]. 김현영, 「高麗判定百姓’의 實체와 성격 - 14세기말 · 15세기초 良人確保政策과 관련하여 -」, 『史學研究』 38, 1984 ; 李榮薰, 「朝鮮前期 名字 考察 - 16세기 土地賣買名文으로부터 -」, 『古文書研究』 6, 한국고문서학회, 1994, 32-33쪽 [이상, 百姓 연구]. 특히, 李俊九의 논문(2000a)은 1528년도 안동호적 단편을 비롯하여 ‘白丁’이 확인되는 17세기 전반 호적대장들(1606년도 山陰 · 1609년도 蔚山 · 1630년도 山陰)을 분석하고 있다.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의 호적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白丁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11) 卷首가 卉장되어 表題는 알 수 없으나, 본문 중에 ‘萬曆參拾肆年山陰縣戶籍大帳’으로 內題를 기재하고 있다.

12) 1606년도 산음호적을 분석한 연구 성과는 崔在錫, 「朝鮮前期의 家族形態」, 『震檀學報』 37, 1974 ; 崔在錫, 「17世紀 初의 同姓婚 - 山陰帳籍의 分析 -」, 『震檀學報』 46 · 47合, 1979 ; 盧鎮英, 「十七世紀初 山陰縣의 社會身分構造와 그 變動」, 『歷史教育』 25, 1979 ; 盧明鎬, 「山陰戶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서울大, 1979 ; 鄭鉉在, 「山陰縣 戶籍大帳에 대한 一研究 - 丙午式年 戶籍의 수정과 보완 -」, 『慶尙史學』 14, 慶尙大, 1998 ; 李俊九, 앞의 논문(2000a) ; 鄭鉉在, 「山陰戶籍을 통해 본 婦女呼稱」, 『慶尙史學』 15 · 16合, 2000 ; 鄭鉉在, 「山陰戶籍(1606年)을 통해 본 奴婢結婚樣態」, 『慶尙史學』 19, 2003 등.

자료의 후반부에는 인근 丹城縣의 호적이 合錄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되는 面의 상단 여백에 '山陰縣任縣丹城...'이라고 적고 있다. 임진왜란 때 독립 군현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단성현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였기에 宣祖 32년(1599)에 連接한 산음현에 '任縣'으로 併屬하였다¹³⁾ 것이다. 단성호적 부분은 별도의 항목을 두어 살피기로 하고 이에서는 산음 호적만을 보겠다.

이 자료에는 식별이 가능한 家戶 총 599戶가 등재되었으며,¹⁴⁾ 산음호적이 끝나는 부분에 '都已上'條를 두어 1606년도 산음현 전체의 戶數를 비롯하여 신분별·연령별 口數 집계를 기재하고 있다.

都已上 630戶內

良丁 壯男 398 · 壯女 422 · 老男 270¹⁵⁾ · 老女 102 · 弱男 23 · 弱女 2

公賤 壯奴 71 · 壯婢 71 · 老奴 27 · 弱奴 20 · 弱婢 11

私賤 壯奴 403 · 壯婢 382 · 老奴 68 · 老婢 53 · 弱奴 67 · 弱婢 67

際

監官 幼學 吳慶遠

色吏 陳大勳

위에서 호수가 630戶로 집계된 점을 보면 파손이 심한 자료의 전반부에 약 30戶가 있었음을 짐작해 준다. 그런데 실제 본문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職役으로 등재되었던 데 반하여, 口數의 집계에서는 '良·賤(公·私)' 신분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편 이 자료의 특징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의 호적이기에 統·戶의 No. 기재 없이 각 호를 連書하고 있다.
 - ② 家戶가 바뀔 때마다 '戶'字를 크고 진하게 씀으로서 구분하고 있다.
 - ③ 등재된 모든 生存 인물은 左右 細字雙行으로 世系를 밝히고 있는데, 良신분은 四祖를 기재한 반면 賤신분은 父母만을 기재하고 있다.
 - ④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戶', 즉 빈집[空家·虛戶]이 발견되고 있다.
- ☞ 사례 : "戶貴年^年貳拾玖寅生被據"(月音洞 23번 째 戶)
- ⑤ 役名을 '百姓'으로 기재한 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戶首의 役名에서는 보

13) 「丹城縣邑誌」(1832년경; 『慶尙道邑誌』 18책 : 한국학문현연구소編, 『邑誌』 1, 아세아문화사, 1982 영인본), 建置沿革條. "...宣祖朝己亥(1599-인용자註) 以倭亂後蕩殘 合于山淸(山陰의 後名-인용자註)縣. 光海癸丑(1613-인용자註) 因土人上言復邑 邑于來山下...".

14)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의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388쪽.

15) 자료에는 "老男貳百貳百柒拾"으로 기재되었기에, '老男貳百柒拾'으로 정정하였다.

이지 않고(따라서, 앞의 1528년도 안동호적과 차이가 있음) 대개가 노비의 父 役名이었다.

☞ 사례 : “…婢春梅年肆拾玖戊午生父百姓鄭坪乙孫(右行細字)/母婢莫代(左行細字)奴德從年參拾捌己巳生父百姓閔希種(右行細字)/母婢走德(左行細字)…”(梧耳谷里 22번 째 戶)

☞ 사례 : “戶掌隸院婢順吉年貳拾伍壬午生父百姓宋己命(右行細字)/母寺婢尹今(左行細字)奴金內1守矣妻”(黃山里 91번 째 戶)

⑥ ‘白丁’ 또한 적지 않아 나타나고 있었으나, 1528년 安東 호적에서와 같은 ‘新白丁’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 사례 : “戶白丁丙連年柒拾陸庚寅生本雲峯父白丁石連祖同(右行細字)/曾祖不知外祖不知(左行細字)率子憲從年參拾伍壬申生妻召史年參拾參甲戌生本不知率子憲山年肆拾參甲子生妻召史年參拾伍壬申生本不知戶兼司僕姜山年陸拾壹丙午生本雲峯父白丁石連祖白丁李武全本山陰(左行細字)妻閔召史年肆拾參甲子生本雲峯父箕子殿奉世忠祖禪惠將軍世禎(右行細字)/曾祖禮奉寺直長享孫外祖百姓金文金海(左行細字)婢豆甲年肆拾伍壬戌生父奴豆(右行細字)/求里(左行細字)母婢(右行細字)/莫代(左行細字)逃亡…”(梧耳谷里 43·44번 째 戶)

☞ 사례 : “戶白丁同伊年伍拾伍壬子生本山陰父白丁鶴孫祖銀閔曾祖(右行細字)/武金外祖白丁延同本三嘉(左行細字)妻良女趙召史年肆拾丁卯生本安陰百姓介同祖丹伊曾祖(右行細字)/不知外祖金淡本安陰(左行細字)率弟閔同年肆拾丁卯生本四祖(右行細字)/上同(左行細字)”(生林里 27번 째 戶)

⑦ 왜란이 끝난 직후에 작성된 호적이라는 특성과 관계하여, ‘被擄’된 자들이 적지 않아 발견되며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있다.

☞ 사례 : “黃山里戶司贍寺奴文世年伍拾丁巳生本父寺奴於石(右行細字)/母私婢石代(左行細字)妻掌隸院寺婢允今年伍拾伍壬子生父寺奴仰伊(右行細字)/母寺婢億每(左行細字)率子奴順龍年陸辛丑生婢古應伊年伍拾丁巳生奴憲從年肆拾柒庚申生等被擄”(黃山里 1번 째 戶)

따라서 상기 특징 중 ⑤·⑥에서의 ‘百姓’과 ‘白丁’ 기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목해야 할 연구 대상이 되겠다. 또한 ④에서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空家·虛戶]이 버젓이 호적 작성 과정에서 ‘戶’로 인식되었으며 元戶 數에 集計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조선 시대 호적에 등재된 ‘戶’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¹⁶⁾ 後述하는 1609년도 蔚山府호적에서도 상당수가, 그리고 1630년도 산음호적에서는 多大하게 이와 같은 ‘빈집 戶’가 등재되고 있었던 것이다.

3) 1606년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¹⁷⁾

16) 韓榮國은 1606년도 산음호적 月晉洞의 23번 째로 등재된 ‘戶’가 빈집이며, 이에 더하여 월음동에서 확인되는 父子간의 ‘戶’들 모두가 連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戶’의 族員數도 2~4人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조선시대 호적대장에 등재된 ‘戶’가 하나의 家屋을 의미한다는 시사 를 던진 바 있다(『朝鮮王朝 戶籍의 基礎의 研究』, 1985, 201-209쪽).

17) 합록되었기에 공식 冊題는 없고, 다만 里가 시작될 때마다 호적의 상단 여백에 ‘山陰縣任縣丹城元

이 호적은 별도로 帳冊된 것이 아니라 상기 산음호적의 후반부에 合錄된 것이며,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1980년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영인 간행된 이후,¹⁸⁾ 적지 않이 연구에 활용되었다.¹⁹⁾

卷末 부분에 파손이 심하여 대략 파악 가능한 가호는 총 214戶 정도인데, 자료의 특징은 1606년도 산음호적과 대동소이하다. 단, '빈집 戶'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밖에 세세한 특징을 들면 아래와 같다.

① 役名을 '百姓'으로 기재한 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산음호적과 마찬가지로 戶首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대개가 노비의 父役名으로 발견된다. 단, 父가 아닌 母가 '百姓'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단 1건 확인된다. 매우 독특한 사례라 하겠다.

☞ 사례 : “<缺落>壬戌生父驛吏麻田(右行細字)/母百姓今春(左行細字)率子春福年拾丁酉生”(『단성호적』下, 866쪽-11행)

② 역명을 '白丁'으로 기재한 자는 단 1건 나타난다. 역시 노비의 父였다.

☞ 사례 : “戶原從功臣幼學韓大器年伍拾陸辛亥生本丙午…[?]屎代年肆拾丁卯生父白丁屎金(右行細字)/母良女召史(左行細字)…”(『단성호적』下, 841쪽-11행~842쪽-1행)

③ 통상 신분 분류 용어로 사용되는 '兩班'을 職役名으로 기재한 경우가 단 1건 발견된다. 私奴의 父에게서였다.²⁰⁾

☞ 사례 : “戶原從功臣軍資監奉事李三才年伍拾陸辛亥生本長水…奴千良年肆拾壹丙寅生父兩班權士衡(右行細字)/母戶婢應介(左行細字)奴巨良年貳拾玖戊寅生父母(右行細字)/上同(左行細字)逃亡…”(『단성호적』下, 856쪽-12~14행)

④ 倭亂과 饑饉 등 피해상을 염볼 수 있는 기재로써 '被擄' 외에도 '飢民立案婢', '三歲前收養遺棄兒奴' 등 주목할 만한 용례가 확인된다.

☞ 사례 : “戶幼學李光友年柒拾捌己丑生本江陽…婢四月年陸拾貳乙巳生父名不知(右行細字)/母戶婢四代(左行細字)逃婢永介年肆拾貳乙丑生父名不知(右行細字)/母戶婢恣致(左行細字)被擄…”(『단성호적』下, 837쪽-10~12행)

堂里', '慶尙右道山陰任縣元縣里', '山陰任縣北洞里' …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1606년도 단성호적만을 떼어내어 命名한다면 '萬曆參拾肆年山陰縣任縣丹城戶籍大帳' 정도가 되겠다.

18) 上, 下권으로 간행된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의 하권에 附錄되었다. 이하, 『단성호적』下'로 약칭함.

19) 韓基範, 「17世紀初 丹城縣民의 身分構成—戶籍分析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0, 1982 ; 崔槿默·韓基範, 「17世紀의 同姓婚—丹城戶籍을 中心으로—」,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9-2, 忠南大, 1982 ; 韓基範, 「17世紀 驛屬人의 身分의 地位—丹城戶籍 分析을 中心으로—」, 『論文集』 13, 大田實業專門大學·中京工業專門大學, 1984 ; 鄭鉉在, 「丙午式年(1606년) 丹城戶籍에 대한 기초적 검토」, 『慶尙史學』 9, 1993 등.

20) 따라서 이 사노는 양반과 '戶婢' 사이에 태어난 莘子가 되겠다. 父를 '兩班'으로 표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출생 사실이 작용했던 듯 하다.

☞ 사례 : “…飢民立案婢金召史年參拾捌己巳生逃亡父奉世(右行細字)/母召史(左行細字)…”(『단성호적』 下, 841쪽-8~9행)

☞ 사례 : “…奴岩回年伍拾丁己生父不知(右行細字)/母戶婢六月(左行細字)同奴三歲前收養遣棄兒奴正守年陸辛丑生…”(『단성호적』 下, 858쪽-13~14행)

4) 1609년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²¹⁾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No.14986】

光海君 원년(1609 · 己酉式 · 萬曆 37) 경상도 蔚山府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으로 이 역시 왜란 직후의 주민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이나 이상하리만치 연구자의 활용이 다 대하지는 않았다.²²⁾

자료의 卷首와 卷末이 낙장된 상태로 대략 1,100戶 정도가 확인 가능하다.²³⁾ 이밖에 말미에 수록된 40여 戶 가량은 任縣인 彦陽縣의 川南里 호적이다. 언양현은 宣祖 32년(1599)에 연접한 울산부에 併屬되었다가 光海君 4년(1612)에 이르러 復設되는데,²⁴⁾ 역시 독립 군현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왜란의 피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609년도 언양호적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자료의 권말이 낙장되어 ‘都已上’조가 수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 里別 호적이 끝날 때마다 ‘已上’조 성격의 집계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일례로 南面 靑良里의 경우를 적기하면 아래와 같다.

元戶 78戶內 新戶 7戶
 元人口 243口內 逃亡壹(右行細字)/故壹(左行細字)計除
 實人口 241口內
 良 壯男 75口 · 老男 11口 · 弱男 3口
 壯女 52口 · 老女 2口 · 弱女 1口
 公 壯奴 2口 · 壯婢 4口 · 弱婢 1口
 私 壯奴 16口 · 弱奴 9口 · 壯婢 2口 · 老婢 2口 · 弱婢 4口

21) 卷首의 落張이 심하여 表題는 ‘萬曆己酉 …’ 정도만 확인되며, 內題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호적의 명칭을 추정 · 복원한다면 ‘萬曆己酉式蔚山府戶籍大帳’ 정도가 적당하겠다. 한편 末尾에 “嘉慶二十四年己卯改粧衣” 즉, 純祖 19년(1819 · 嘉慶 24 · 己卯)에 표지를 改粧한 사실을 적고 있다.

22) 이 호적을 분석한 연구는 韓榮國, 「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 – 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중심으로 –(上 · 下)」, 『歷史學報』 75 · 76合 · 77, 1977 · 1978 ; 韓榮國, 「豆毛岳考」, 『韓沽効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 朴在寬, 「17세기초 社會身分構造의 變化 : 蔚山府己酉式(1609년)戶籍臺帳의 分析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李俊九, 앞의 논문(2000a)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23) 韓榮國, 위의 논문(1977), 182쪽.

24) 「彦陽縣邑誌」(1832년경; 『慶尙道邑誌』 20책), 建置沿革條. “…宣祖朝己亥(1599–인용자註) 屬于蔚山. 萬曆四十年壬子(1612–인용자註) 復設”.

流民召募 良 壯男 12口 · 弱男 2口 · 壯女 11口 · 弱女 1口

降倭 5口

內需司 壯婢 1口

위 기재에서 주목되는 점은 앞에서 살핀 1606년도 산음호적과 마찬가지로 ‘良·賤’ 신분별 구분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대체로 오가작통법이 준행된(1675년) 이후에 작성된 호적 대장의 ‘도이상’조를 보면, 良신분을 ‘時仕僉使·生員·進士·出身·幼學·業儒·校生…正兵·御營軍·御營軍保·京別隊…良人·閑良·都訓導良人·日守·驛卒·工曹匠人…寡女·婦女·良女·驛女…’(1678년도 단성호적)25) 등과 같이 細分하고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국가의 신분 인식 및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재료가 되겠는데, 오가작통법의 전면적 시행과 부합하여 인민에 대한 戶口 과악·통제가 강화되면 서부터, 良賤制의 신분 구분 방식이 사라졌다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된다.²⁶⁾

한편, 1609년도 울산호적은 그 邑格·邑勢라던가 沿海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서 豫想되듯이 특이한 양상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행정구역을 동·서·남·북면의 方位面으로 편제하고 있다.
 - ② 家戶가 바뀔 때마다 ‘戶’字를 크고 진하게 씀으로서 구분하고 있으며, 連書하고 있다.
 - ③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이라 統·戶의 No. 표기는 보이지 않으나, 대략 10戶마다 統主(統首)를 擇定하고 있다. 합록된 1609년도 彦陽호적, 그리고 1672년도 울산호적과 함께 1675년 이전에 작성된 호적 중 유일하게 作統(‘十家作統’)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 ☞ 사례 : “熊村里戶統守門將仇馨未年伍拾庚申本蔚山…”(熊村里 1번 째 戶) “戶統守門將襄應孫年伍拾參丁巳本蔚山…”(西面 熊村里 11번 째 戶)
- ④ 앞에서 살핀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左右 細字雙行으로 世系를 밝히고 있는데, 良신분은 四祖를 기재한 반면 賤신분은 父母만을 기재하고 있다.
 - ⑤ 1528년 안동호적과 마찬가지로 註記 사항에 ‘節現’을 기재하고 있다.
- ☞ 사례 : “戶前縣令尹弘鳴年肆拾柒癸亥本坡平…子幼學衡年貳拾壹己丑節(右行細字)現(左行細字)…”(東面 農所里 3번 째 戶)

25) 『단성호적』 上, 147-149쪽.

26) 후술하겠지만, 참고로 1639년도 海南縣호적에서는 良賤制의 신분 구분이 아닌 직역별(‘良’신분의 세분) 집계를 하고 있는 반면, 1663년도 漢城府의 北部호적에서는 각 家戶를 크게 ‘顯’·‘作’(이상, ‘良’신분)·‘案’·‘賤’(이상, ‘賤’신분)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해남의 경우 17세기 전반기에 이미 양천제적 신분 구분이 호적에서 사라졌으며, 한성부 북부의 경우는 17세기 중엽까지 양천제적 신분 구분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⑥ 앞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百姓’과 ‘白丁’이 적지 않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百姓’과 ‘白丁’을 역명으로 한 戶首가 간혹 확인되고 있다.

☞ 사례 : “戶百姓李毛老孫年參拾壹己卯本江原道肝城公兄津父百姓夫去之祖百姓石只曾祖孟石外祖(右行細字)/百姓李石本江原道襄陽仇浦津(左行細字)妻百姓內隱從年參拾壹己卯本江原道肝城公兄津父百姓劉福(右行細字)/三祖不知(左行細字)同生兄李或年參拾參丁丑本江原道肝城公兄津父百姓夫去之祖百姓石只曾祖孟石外祖百姓(右行細字)/姓李石本江原道襄陽仇浦津(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參拾伍乙亥本江原道古城梨津父百姓金岩外(右行細字)/四祖不知(左行細字)”(東面 柳等浦里 169번 째 戶)

☞ 사례 : “新戶白丁李彥山年陸拾庚庚本蔚山父白丁宮山祖白丁能同曾祖(右行細字)/能伊伊外祖正兵金順之本密陽(左行細字)妻私婢姜古未年伍拾參丁巳父母(右行細字)/不知(左行細字)上典東萊居朴蜜”(南面 青良里 77번 째 戶)

⑦ 울산 역시 倭侵으로부터 무사하지 못하였기에 ‘被擄’된 자가 적지 않이 나타나고 있다. 단, 앞에서 살핀 자료와 다소 다른 점은 被擄된 시기를 밝히고 있는 점이다. 또한 被擄되었다가 도망쳐서 돌아온 자도 나타나고 있다.

☞ 사례 : “…奴獻必年肆拾柒癸亥乙未年(1595년-인용자註)被擄同生買得奴鶴文年參拾柒癸酉丙申年(1596년-인용자註)被擄…”(北面 凡西里 25번 째 戶)

☞ 사례 : “戶被擄逃還金明孫年參拾陸甲子本興陽父正兵士奉祖二祖不知外(右行細字)/祖正兵朴石卜本興陽(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參拾玖辛未本興陽父水軍金本二祖不知外(右行細字)/祖水軍金巾本金海(左行細字)”(南面 青良里 78번 째 戶)

⑧ ‘豆毛岳’이라는 독특한 역명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상도 및 전라도 연해 지역에 정착한 出陸 濟州島民이었다고 한다.²⁷⁾ 현존 호적 중에는 울산호적(1609-1708년도 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 사례 : “新戶豆毛岳金三同年伍拾陸甲寅本蔚山父豆毛岳古音同祖豆毛岳內1伊(右行細字)/曾祖不知外祖豆毛岳金通金本蔚山(左行細字)妻豆毛岳眞今年伍拾參丁巳本蔚山父豆毛岳古音孫祖豆毛岳□孫(右行細字)/曾祖不知外祖豆毛岳金通金本蔚山(左行細字)”(자료의 1-2행)

⑨ ‘向化’인이 적지 않이 확인된다. 向化人은 조선으로 彙化한 자를 일컫는 말로 본 호적이 작성된 1609년 시기의 상황과 관련한다면 주로 明兵이나 倭兵이 되겠다. 그런데 倭兵의 경우 다음에 후술하듯이 본 호적에서 ‘降倭’로 別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向化’는 明兵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귀화한 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이들이 本貫으로 기재한 지역명이 독특한 점(黑龍江, 大同江 등)도 주목된다.

☞ 사례 : “戶向化金應丁年肆拾陸甲子本黑龍江父土郎孫祖千守曾祖不(右行細字)/知外祖金千孫本黑龍江(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肆拾陸甲子本黑龍江父末乙□祖孟無□赤曾祖(右行細字)/不知外祖不知(左行細字)”(東面 柳等浦里 165번 째 戶)

☞ 사례 : “戶向化洪守年肆拾參丁卯本大同江父石連祖或曾祖仲夫(右行細字)/外祖尹光弼本大同江(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肆拾參丁卯父內隱石祖古音同曾祖(右行細字)/小應同外祖不知(左行細字)”(東面 柳等浦里 168번 째 戶)

⑩ 왜병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귀화한 ‘降倭’人 또한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降倭人에게는 반드시 挾人·挾戶가 배정되고 있었던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특징 ⑪에서 상세히 서술하겠다.

☞ 사례 : “戶降倭僉知古□非年伍拾庚申去甲午(1594년-인용자註)肆月分出來左防禦使陣從軍妻

27) 韓榮國, 앞의 논문(1981).

良女甘來年肆拾參丁卯本忠清道肆祖不知"(北面 凡西里 49번 째 戶)

☞ 사례 : “戶降倭僉知世和致年肆拾庚午妻召史年肆拾伍乙丑本蔚山又妻良女召史年參拾庚辰本京中父金希福三祖不知(右行細字)/外祖金¹本²本³(左行細字)僕人正兵崔文年肆拾陸甲子……”(西面 熊村里 59번 째 戶)

⑪ 挾人·挟戶(‘僕’으로 기재)가 다수 발견되는데, 모두 降倭人이 ‘主戶’였다. ‘降倭人’ 주호-朝鮮人 협인·협호의 구성²⁸⁾은 왜란 직후라는 시대적, 울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서나 찾을 수 있는 양상임에 틀림 없겠다.

☞ 사례 : “戶降倭僉知古¹非年伍拾庚申…新戶降倭僉知古²非僕晉州案付寺奴萬乞年伍拾陸甲寅父寺奴¹同兒(右行細字)/時母外俱沒四祖不知(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伍拾柒癸丑本晉州兒時父母俱沒肆祖不知新戶同僕私奴²孫年肆拾伍乙丑兒時父母俱沒肆祖不知上典全羅道南原居楊千生妻良女召史年肆拾柒癸亥本晉州父正兵朴守山兒時(右行細字)/俱沒三祖不知(左行細字)新戶降倭古³非僕晉全羅道淳昌府正兵徐戊鶴年參拾柒癸酉父正兵豆應乞兒(右行細字)/時俱沒參祖不知(左行細字)妻私婢億代年伍拾庚戌父私奴¹孫(右行細字)/母良女今伊(左行細字)上典報恩居安²守”(北面 凡西里 49-52번 째 戶)

☞ 사례 : “戶降倭僉知世和致年肆拾庚午妻召史年肆拾伍乙丑本蔚山又妻良女召史年參拾庚辰本京中父金希福三祖不知(右行細字)/外祖金¹本²本³(左行細字)僕人正兵崔文年肆拾陸甲子本長興父白三(右行細字)/祖不知(左行細字)僕人金介年參拾伍乙亥本全州父生三祖(右行細字)/不知(左行細字)今年正月分逃亡僕人崔自隱同年拾伍乙未節(右行細字)/現(左行細字)戶降倭訓鍊判事老己汝茂年肆拾陸甲子妻召史年伍拾陸甲寅本長城父李千三(右行細字)/祖不知(左行細字)僕人良鄭介年參拾捌壬申本羅州父山三(右行細字)/祖不知(左行細字)戶降倭判事世¹己年參拾玖辛未妻私婢夢化年參拾庚辰上典黃山驛吏崔芳草僕人奴命生年參拾柒癸酉本慶州父命春母(右行細字)/私婢小今(左行細字)妻寺婢億每上典慶州居黃生僕人金山年伍拾參丁巳本興陽父正兵許夫祖石乞曾祖(右行細字)/不知外祖金公希本密陽(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參拾伍乙亥本南平父正兵崔永守二祖不知(右行細字)/外祖水軍金山福本南平(左行細字)”(西面 熊村里 59-61번 째 戶)

⑫ 1606년도 산음호적에서와 마찬가지로 ‘戶’로 등재된 빈집[空家·虛戶]이 확인된다.

☞ 사례 : “戶降倭右時老年肆拾捌壬戌妻私婢春代年貳拾捌壬午戊申年梁山移去僕降倭也其之年參拾參丁丑戊申年梁山移去”(北面 凡西里 53번 째 戶)

☞ 사례 : “戶流民召募正兵韓國柱年參拾貳戊寅本西京機張移去父正兵¹從(右行細字)/祖正兵雄(左行細字)/曾祖還外祖水(右行細字)/軍金世右本金海(左行細字)妻無戊申(1608년-인용자註)三月日機張移去”(南面 大代如里 4번 째 戶)

☞ 사례 : “戶東萊召募裴¹山年參拾參丁丑本東萊丁未(1607년)三月故妻寺婢彥介年參拾庚辰本梁山東萊移去父寺奴國(右行細字)/母寺婢春(左行細字)戶私奴宋連年陸拾伍乙巳本東萊丙午(1606년)十月故妻良女召史年肆拾伍乙丑本蔚山父水軍李福祖水軍營未曾祖(右行細字)/水軍春山外祖金¹未本蔚山(左行細字)逃亡”(西面 熊村里 64-65번 째 戶)

상기 1609년도 울산호적의 諸특징 중 특히 ⑨~⑫는 중점 연구과제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본 자료를 활용하여 이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보이

28) 반드시 협인을 조선인으로만 배정한 것은 아니다. 본 호적의 특징 ⑪에서 제시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降倭人인 也其之가 降倭人 右時老의 협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 않는다.

5) 1609년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²⁹⁾

1609년도 연양호적은 앞에서 살핀 울산호적의 말미에 ‘任縣’으로 合錄된 것으로, 卷末의 낙장이 심하여 ‘川南里’호적 3面에 등재된 40여 戶 정도만이 파악 가능하다. 統·戶 No.의 표기 없이 10家마다 作統하고 있는 등, 자료의 특징은 앞의 울산호적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前식년 호적에서는 없다가 이번 호적에 새로 등재된 자에 대한 표기 방식으로 ‘節現’ 외에 ‘加現’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은 울산호적과 차이라 하겠다.³⁰⁾

☞사례 : “戶出身建功將軍訓正李文弼年肆拾捌壬戌本星州父正兵仁弼祖幼學成良曾祖前(右行細字)/訓導珍星外祖正兵金佐儀本彦陽(左行細字)…率男忠贊衛李永立年拾伍乙未加現”(자료의 2면 18-19행)

☞사례 : “…奴毛連貳所生奴連守年

拾庚子母良女(右行細字)/召史(左行細字)節現”(자료의 3면 12-13행)

한편, 앞의 울산호적에서 ‘俠人’·‘俠戶’가 나타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18·19세기 연양호적에서도 협인이 다대하게 나타나고 있기에,³¹⁾ 이 자료 또한 주목되었으나 아쉽게도 협인·협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남아있는 자료가 소량인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³²⁾

29) 합록되었기에 공식 冊題는 없다. 다만 연양호적이 시작될 때 상단 여백에 ‘任內彦陽縣川南里’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1609년도 연양호적만을 별도로 命名한다면 ‘萬曆己酉式蔚山府任縣彦陽戶籍大帳’ 정도가 되겠다.

30) 17세기 중엽 이후의 호적대장에서는 ‘節現’ 표기가 잘 발견되지 않는 대신 거의 ‘加現’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節現’ 표기가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三陟府의 準戶口나 戶口單子 자료에서는 19세기 초까지 ‘節現’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朴盛鍾 편, 『東海市 古文書』, 東海文化院, 2002, 74-116쪽). 즉, ‘節現’ 대신 ‘加現’으로 표기가 바뀌는 대세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의 표기를保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참고로 18세기 英祖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成冊規式(甲午式)』(규장각 소장, No.12317)에는 ‘加現成冊’이란 이름으로 補助成冊을 열거하고 있다.

31) 18·19세기 연양호적에 보이는 挾人(俠人)을 분석한 연구로는 李榮薰, 「朝鮮後期 農民經營에 있어서 主戶-挟戶關係」, 『朝鮮後期 土地所有의 基本構造와 農民經營』,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 韓榮國, 「朝鮮 後期의 挾人·挟戶-彦陽縣戶籍大帳의 挾人口를 中心으로-」,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 朴容淑, 「朝鮮後期의 挾戶-彦陽戶籍의 事例를 중심으로-」, 『師大論文集-人文·自然科學篇』 14, 부산대학교, 1987 ; 林學成, 「조선 후기 경상도 彦陽지역 ‘主-挟’型 家戶의 族의 결합양태-1861년도 彦陽戶籍의 사례 분석-」, 『國史館論叢』 100, 국사편찬위원회, 2002 등이 있다.

6) 1630년 慶尙道山陰縣戶籍大帳³³⁾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No.14640】

仁祖 8년(1630·庚午式·崇禎 3) 경상도 山陰縣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1606년도 산음호적이 남아있기에 연구자의 관심과 활용이 적지 않았다.³⁴⁾

자료의 상태는 卷首·卷末 부분에 낙장과 파손이 있어 대략 900여 戶 정도가 파악 가능하다.³⁵⁾ 특히 왜란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뒤에 작성된 호적이라 1606년도 산음·단성호적 및 1609년도 울산호적에서의 양상과도 비교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렇지만 그 세세한 주민 양상에 대한 설명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기에 이에서는 자료의 특징만을 열거하겠다.

① 행정구역을 동·서·남·북면의 方位面으로 편제하고 있다.

② 家戶가 바뀔 때마다 '戶'字를 크고 진하게 씀으로서 구분하고 있으며, 連書하고 있다.

③ 統·戶의 No. 表記는 보이지 않는다. 단, '別戶'·'加戶'·'加現戶' 등이 기재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핀 호적들에서는 볼 수 없었다.³⁶⁾

☞ 사례 : “**加戶** 正兵金弘老年參拾伍丙申生本清道父別侍衛潤祖內禁衛世貞曾祖將(右行細字)/仕郎訓導匡弼外祖忠順衛朴忠世本咸陽(左行細字)妻宋召史年參拾貳己亥生本金海…”(北面 草谷里 2번 째 戶)

☞ 사례 : “**別戶** 書員陳景瑞年貳拾玖壬寅生本新反父水(右行細字)/軍致京(左行細字)/祖起曾祖有良外(右行細字)/祖水軍許淡叔本金海(左行細字)奴希守年肆拾捌父林彥京(右行細字)/母私婢進今(左行細字)逃亡…”(北面 草谷里 4번 째 戶)

☞ 사례 : “**加現戶** 流來人奴池金年伍拾伍丙子生父母不知(右行細字)/上典不知(左行細字)”(西面 古邑內里 68번 째 戶)

④ 역시 世系를 左右 細字雙行으로 밝히고 있는데, 良신분은 四祖를 기재한 반면 賤신분은 父母만을 기재하고 있다.

⑤ 今式年 호적 작성시 새로 등재된 자에 대한 표기로는 '加現'만이 보인다. 그리고 매우 드물 예로 '還現'이 발견된다. 이전 호적에 등재되었다가 移去·逃亡 등의 연유로 호적에 빠진 후, 歸還하여 이번 호적에 다시 등재된 자를 일컫는 용어로 추정된다.

☞ 사례 : “**戶** 幼學許義福年伍拾壹庚辰生本河陽…同婢一所生婢月代年肆拾參不喩柒拾參己未生逃

32) 현존 언양호적으로는 이 1609년도 任縣호적과 1711년·1777년·1795년·1798년(2책)·1813년·1825년·1858년·1861년(2책) 등인데, 협인을 기재하고 있는 호적은 1777년부터이다.

33) 이 호적 역시 卷首가 낙장되어 자료명을 알 수가 없다. 다만 里가 시작될 때마다 호적의 첫 行 및 상단 여백에 '慶尙道山陰北面月晉洞里', '慶尙道山陰西面今勿石里', '慶尙道山陰東面水多谷里' …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거의 全損된 첫 面 우측에 '庚午', 그리고 月晉洞里호적의 첫 行 중단에 '三去庚午'[“(조선 개창 이후) 세 번 경과한庚午年”. 즉, 1630년] 등으로 大書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호적의 명칭을 추정·복원한다면 '慶尙道山陰縣庚午式戶籍大帳' 정도가 적당하겠다.

34) 앞의 주 12에서 제시한 논문들의 대개가 1630년도 산음호적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있다.

35) 韓榮國, 앞의 논문(1985), 388-389쪽.

36) 1609년도 울산·언양호적에서는 '新戶'만이 나타나고 있다.

亡加現二所生婢淡伊年柒拾辛酉生加現同婢一所生婢牙之年伍拾辛巳生加現同婢一所生婢毛來年貳拾玖壬寅生…(西面 今勿石里 17번 째 戶)

☞ 사례 : “(戶□□□)彦倫年柒拾參戊午生本山陰父大石祖名孫曾祖名同(右行細字)/外祖洪允本山陰(左行細字)還現率子士龍年參拾捌癸巳生”(西面 西村里 10번 째 戶)

⑥ ‘百姓’ 및 ‘白丁’을 역명으로 기재한 자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 사례 : “戶故百姓金萬春妻趙召史年伍拾壹庚辰生父莫同(右行細字)/三祖不知(左行細字)戶幼學林星敬年陸拾辛未生本羅州…奴彥金年伍拾肆丁丑生父百姓五作(右行細字)/母戶婢春代(左行細字)被擄婢彥玉年伍拾壹庚辰生父百姓五作母(右行細字)/戶婢春代(左行細字)被擄…奴姦石年陸拾參戊辰生父戶奴姦千(右行細字)/母百姓順介(左行細字)逃亡…”(北面 生林里 6·7번 째 戶)

☞ 사례 : “戶白丁進伊年捌拾壹庚戌生本山陰父苔孫祖同曾祖不知(右行細字)/外祖白年本三嘉(左行細字)妻介之不喻良妻召史年陸拾陸乙丑生本三嘉四祖(右行細字)/不知(左行細字)率子件里山年參拾柒甲午生率子姦十一年參拾伍丙申生戶白丁翌其知年陸拾參戊辰生本山陰父孫祖興曾祖不知(右行細字)/外祖部之本宜寧(左行細字)逃亡”(北面 釜谷里 4·5번 째 戶)

⑦ 왜란의 상처인 ‘被擄’人을 여전히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가 노비에게 부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비 소유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 사례 : “戶保人林士衡年陸拾貳己巳生本羅州父宣教郎官桂秀祖幼學遇和曾(右行細字)/祖宣教郎世良外祖宋珏本陝川(左行細字)…婢於代年陸拾肆丁卯生父戶奴未乙伊(右行細字)/母良女召史(左行細字)被擄婢福今年參拾玖壬辰生父(右行細字)/私(左行細字)/奴年乞母(右行細字)/私婢恩介(左行細字)被擄奴億福年柒拾參戊午生父百姓張彥(右行細字)/母戶婢億今(左行細字)被擄婢進代年陸拾肆丁卯生父莫同(右行細字)/母戶婢進伊(左行細字)被擄”(南面 智谷里 2번 째 戶)

⑧ ‘挾戶’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主戶’와 ‘挾戶’의 戶首는 모두 친인척(父子 또는 妻父와 婿) 관계로 확인된다.

☞ 사례 : “戶水軍李國連年柒拾伍丙辰生本山陰父破回祖石曾祖聰(右行細字)/禮外祖李文英本山陰(左行細字)妻班不喻潘召史年肆拾柒甲申生本安陰父或云祖南曾祖仁(右行細字)/外祖許仁本咸陽(左行細字)加現挾戶水軍成應民年貳拾壹庚戌生本昌寧父春鴻祖夢虎曾祖禦侮將(右行細字)/軍萬亨外祖沈大好本山陰(左行細字)妻李召史年貳拾貳己酉生本山陰父國連祖破回曾祖石(右行細字)/文外祖潘或云本安陰(左行細字)”(西面 古邑內里 1·2번 째 戶)

☞ 사례 : “戶保人鄭荇年柒拾柒甲寅生本晉州父宣署將軍賢祖將仕郎禮賓寺參奉汝謨曾祖(右行細字)/宜務郎宗簿寺主簿義達外祖禦侮將軍鄭仁本草溪(左行細字)妻宋氏年陸拾柒甲子生本金海父宣署將軍允祖將仕郎訓導忠元曾祖(右行細字)/從仕郎長孫外祖前參奉李重年本陝川(左行細字)率子保人鄭彥龍年參拾壹庚子生婢萬京年伍拾玖壬申生…逃亡挾戶保人鄭彥民年參拾捌癸巳生本晉州父荅祖宣署將軍賢曾祖將仕郎禮賓寺(右行細字)/參奉汝謨外祖宣署將軍宋爰本金海(左行細字)加現妻林氏年參拾壹庚子生本羅州父學生光瑞祖學生廷幹曾(右行細字)/祖建外祖金彥祥本金海(左行細字)”(西面 古邑內里 23·24번 째 戶)

☞ 사례 : “戶定虜衛襄甲重年柒拾肆丁巳生本金海父定虜衛棋壽祖成均生員愼性曾祖禦(右行細字)/侮將軍綸外祖禦侮將軍吳銀文本咸陽(左行細字)妻陳召史故同居父襄棋壽故挾戶正兵襄景敏年參拾貳己亥生本金海父定虜衛甲重祖定虜衛棋(右行細字)/壽曾祖成均生員愼性外祖(左行細字)甲士陳萬(右行細字)/連本咸陽(左行細字)加現妻李召史年貳拾伍丙午生本密陽父世良祖別侍衛連曾祖學生文(右行細字)/弘外祖定陵參奉李成老本泗川(左行細字)婢春代年捌拾玖壬寅生…戶正兵襄英敏年伍拾伍丙子生本金海父定虜衛甲重祖定虜衛棋壽曾祖成均(右行細字)/生員愼性外祖內禁衛徐安樂本安陰(左行細字)妻李召史年伍拾肆丁丑生本三嘉父別侍衛連祖文弘曾祖甲(右行細字)/士順王外祖李尚元本居昌(左行細字)挾戶保人襄弘俊年參拾壹庚子生本丹永父英敏定祖虜衛甲重曾祖定虜(右行細字)/衛棋壽外祖別侍衛李連本三嘉(左行細字)加現妻禹召史年參拾辛丑生本丹永父別侍衛昌祖內禁衛承夏曾祖(右行細字)/幼學勳外祖別侍衛文承本陝川(左行細

字)(西面 古邑内里 39-42번 째 戶)

- ⑨ 1606년도 산음호적과 1609년도 울산호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빈집[空家·虛戶]이 버젓이 '戶'로 등재되고 있다. 그런데 1630년도 산음호적의 경우, 이상하리만치 빈집이 많아 나타나고 있었다.

☞ 사례 : “戶正兵金潮年陸拾辛未生等四祖(右行細字)/不知(左行細字)率子保人龍立年參拾辛丑生等三人咸陽移去”(北面 月音洞里 8번 째 戶)

☞ 사례 : “戶故水軍金植妻朴召史縣內奴中玉戶去奴婢等金方守戶去戶水軍金都叱夫里故戶水軍鄭戒非逃亡戶水軍周世朋逃亡”(東面 水多谷里 1-4번 째 戶)

☞ 사례 : “戶故出身金斗弘妻姜氏其父金信戶移錄”(北面 金谷里 51번 째 戶)

☞ 사례 : “戶日守李士燮及妻房召史并久遠逃亡”(西面 古邑内里 8번 째 戶)³⁷⁾

이상 살펴본 1630년도 산음호적의 諸특징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양상은 '挾戶'의 등재(⑧)와 빈집의 '戶' 등재(⑨) 등이 되겠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 호적대장 상에 '挾戶(俠戶)'가 등재된 자료는 1609년도 울산호적과 본 산음호적, 그리고 1663년도 漢城府 北部호적 등에 불과하다.³⁸⁾ 이 가운데 본 산음호적이 '挾戶'를 가장 많이 등재하고 있기에 그 가치가 높다.

37) 이처럼 전 가족이 아주 오래 전('久遠')에 도망하여 빈집이 된 家戶조차 여전히 호적에서 하나의 '戶'로 등재하고 있는 사례는, 17세기 전반 경상도 산음·울산 등 지역에서는 호적대장을 작성하면서 파악·등재한 '戶'가 바로 家屋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해를 지니게 해준다. 물론 1606년도 丹城호적에서는 빈집이 발견되지 않는다. 역시 파악·등재 대상은 가옥이었으나, 帳籍을 완성하는 과정(單子 제출→中草 작성→帳籍 완성)에서 이들 '빈집 戶'를 脫籍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가설은 오가작통법 준행 이후의 호적 작성 과정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더군다나, 한말 新호적법에 따라 작성된 호적에서는 '戶'=家屋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10家마다 작성한 '統表'를 보면 빈집에도 統·戶 No.를 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호적대장에 등재된 '戶'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완성하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 공감할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다.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韓榮國선생의 試論的 연구(「朝鮮王朝 戶籍의基礎的研究」, 1985, 192-211쪽)를 정독할 필요가 있겠다.

38) 挾人이 등재된 가장 방대한 자료인 18·19세기 彦陽호적대장에서도 '挾戶'는 발견되지 않는다. 협인 및 그 食率이 主戶의 行廊채나 別채, 戶底집 등에 거주한 경우,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호적대장 상에 별개의 '戶'(즉 '挾戶')로 등재되기도 하였지만, 主戶와 합쳐져 하나의 '戶'(즉 '주호 가족+협인') 형태로 등재되기도 하였다고 본다. 18·19세기 연양호적은 후자의 사정·방식에 따라 成籍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漢城府에서 발급한 準戶口자료 중에는 간혹 '挾戶'가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林學成,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口文書에 보이는 '挾戶'의 성격」, 『朝鮮史研究』 7, 1998 ; 林學成,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籍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 - 漢城府 주민의 住居 양상을 究明하기 위한 一試論 -」, 『古文書研究』 24, 2004). 따라서 한성부에서는 전자의 사정·방식이 준용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빈집 戶’가 가장 많이 등재된 자료 역시 본 산음호적이 되겠다. 빈집이 된 연유는 대체로 移去·逃亡·物故 등이다. 마치 오가작통법 준행 이후 작성된 호적대장에서 별도로 수록한 ‘絕戶(雜頃)秩’條를, 1630년도 산음호적에서는 본문에 합쳐 벼린 듯한 인상을 준다.

7) 1639년 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³⁹⁾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No.27491】

仁祖 17년(1639·己卯式·崇禎 12) 전라도 海南縣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의 낙장 일부(22면)를 편철한 것이다. 말미 21~22명은 ‘都已上’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래 예시에서 보듯이 직역별로 인구를 集計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해남현에서는 늦어도 17세기 전반에 이른바 ‘양천제’적 신분 구분 방식이 호적에서 사라졌음을 살필 수 있다.

(男丁 □□□口内)

…<前部 缺落>…

内奴 老 1口

缸人 老 1口

漆匠 壮 1口

…<中략>…

院生 弱 1口

漕軍 壮 1口

驛保 奴(老?) 2口·壯 5口·弱 3口

校奴 壮 1口·弱 7口

通德郎 老 1口

…<中략>…

鄉校齋直 壮 3口·老 1口

別破陣 老 2口·壯 2口

向化奴 老 3口·壯 11口·弱 7口

私奴 老 25口·壯 27口·弱 40口

仰役奴 老 6口·壯 45口·弱 8口

…<中략>…

女丁 1,006口内

39) 호적대장의 낙장을 모아 편철한 것이기에 卷首가 없을 뿐더러, 상단 여백에 그 어떠한 註記도 되어있지 않아 冊題를 비롯하여 작성 지역·시기도 알 수 없다. 다만, 官印과 洞里名·등재 인물 등에 근거하여 이 자료가 1639년 전라도 해남현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의 일부임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말미에 수록된 호적 4面은 오가작통법 준행 이후의 ‘己酉式年’(1729년·1789년·1849년 중 하나)에 작성된 호적대장 낙장이며, 지역은 같은 전라도내의 군현으로 추정된다(『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繢集(史部 2)』, 150-151쪽).

氏老 46口·壯 53口
 良女老 103口·壯 256口·弱 162口
 私婢老 51口·壯 120口·弱 101口
 仰役婢老 13口·壯 58口·弱 11口
 館婢老 1口
 向化婢老 5口·壯 7口·弱 7口
 ...<後部 缺落>...

또한, 위 '도이상'조를 통하여 17세기 전반 해남현 주민의 신분구성이 대략 兩班 10.0%·平民 52.4%·賤民(奴婢) 37.6% 등의 비율을 보였다는 사실도 추가할 수 있다.⁴⁰⁾

자료에서 파악이 가능한 가호는 144戶 정도이다. 따라서 그 분석 대상 수가 적어 17세기 전반 해남현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다만 현존하는 전라도 지역의 조선시대(1896년 이전) 호적대장이 희소하기에⁴¹⁾ 활용 가치는 없지 않다고 본다. 특히, 여타 호적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稽少한 점이 이 자료에서는 적지 않게 확인되는데 그 주요 특징들을 적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第五溫房里'·'第七古談里'·'第八新里'·'第七嚴仇之里'처럼 洞里마다 順次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峯底里第四'와 '海倉里第五' 같은 표기도 보인다.
- ② 統·戶의 No. 표記 없이 '戶'字를 大書하여 連書하고 있는 점 등은 앞에서 살핀 호적들과 동일하다.
- ③ '良·賤' 신분에 차이(즉, 四祖 기재와 父母 기재)를 두면서 世系를 左右 細字雙行으로 기재한 점 역시 동일하나, 다만 사망한 先祖의 경우 名字 다음에 반드시 '故'字를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사례 : “戶縣居前持平尹善道奴山守年柒拾肆丙寅父戶奴兒_姓山_故(右行細字)/母戶婢先介_故(左行細字)率孫女士月年
 玖辛未”(1면 3-4행)

☞ 사례 : “戶折衝將軍中樞府事任俊英年柒拾陸甲子本長興_父禡侮將軍前萬戶希璫_故祖訓鍊主簿_故曾祖(右行細字)/成均

40) 이 신분 구성을 '도이상'조에 접계된 남녀 수치 중 상태가 양호한 女丁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참고로 산음현의 경우(口 분석, 단, 無職役者 제외) 1606년에 양반 13.7%·평민 40.9%·천민 41.7%, 그리고 1630년에 양반 15.9%·평민 43.0%·천민 34.5% 등을 보였으며(盧鎮英, 앞의 논문, 92쪽), 1609년 울산부의 경우(戶 분석)는 양반 10.5%·평민(양인) 62.0%·노비 27.5%를 보인 것(韓榮國, 앞의 논문<1977년>, 185쪽)으로 분석되고 있다.

41)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의 호적대장은 1756년 谷城(1책;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837년 金溝(1책; 개인 소장), 1867년 鎮安(1책;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1888·1891·1894년 南原 屯德坊(3책; 개인 소장), 1894년 光陽(中草 1책;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리고 본 자료 정도이다(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한 濟州 3邑의 것은 제외).

進士世奎故外祖贈嘉善大夫前監司慶晉故本慶州(左行細字)妻金氏年陸拾肆丙子籍金海父箕子殿參奉(右行細字)/文達故祖箕(左行細字)/子殿參奉億均故曾祖訓鍊奉事(右行細字)/崇才故外祖內禁衛尹仁國故本海南(左行細字)率子武學任慶沃年參拾參丁未妻林氏年參拾庚戌籍靈岩父保人慶守祖參奉大喜故曾祖參(右行細字)/奉舉天故外祖參奉李天坤故本海南(左行細字)…(4면 4-7행)

- ④ 私奴婢戶가 다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⁴²⁾ 상전의 거주지는 주로 서울과 전라도 지역이었다.⁴³⁾ 한편 상전이 해남현 이외의 지역, 즉 外方·遠方에 거주하는 私奴婢戶가 무려 82.8%(77戶)나 되었다.

☞ 사례 : “戶忠清道淸州居幼學張士順奴順北月年肆拾伍乙未父私奴丁回(右行細字)/母戶婢旣化故(左行細字)率京居校生李夢碩婢順德年參拾陸甲辰父私奴貴山故(右行細字)/母戶婢斗德故(左行細字)…戶京居前監司崔東立奴丁回年陸拾捌壬申父私奴破回故(右行細字)/母戶婢丁朱故(左行細字)妻京居崔豪婢今延年伍拾玖辛巳父私奴宋世故(右行細字)/母戶婢得今故(左行細字)…戶南原居幼學韓祿奴青山年參拾參丁未父戶私奴旣卜(右行細字)/母戶婢旣同(左行細字)率妻忠淸道竹山居幼學鄭彥弼婢奉介年參拾貳戊申父私奴海奉(右行細字)/母戶婢內1花(左行細字)戶慶尙道晉州居崔汲奴孝山年參拾肆丙午父戶奴大白故(右行細字)/母良女有之故(左行細字)妻慶尙道金海巨幼學尹義尙婢順今年貳拾柒癸丑父私奴順孫故(右行細字)/母戶婢允西非故(左行細字)…戶縣居前持平尹善道婢獨女夏花年陸拾捌壬申父私奴石卜故(右行細字)/母戶婢旣化故(左行細字)…”(9면 3-11행)

- ⑤ ‘買得’, ‘衿得’[깃득; ‘유산 또는 상속의 물으로 획득함’] 등과 같이 소유 노비의 傳來 연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사례 : “戶故訓鍊奉事朴興元妻金氏年肆拾伍乙未籍金海父司果穀德(右行細字)/故祖箕子殿(左行細字)/參奉文達曾祖箕子殿參奉(右行細字)/億均故外祖成均生員尹衡故本海南(左行細字)買得奴春男年拾參丁卯…衿得婢武京年肆拾貳戊戌父私奴風伊故(右行細字)/母戶婢銀從故(左行細字)戊寅逃亡”(3면 12-14행)

- ⑥ 상기 ④·⑤의 특징과 아울러, ‘自己’·‘仰役’·‘戶’·‘班’·‘同’ 등 奴婢의 성격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다.

☞ 사례 : “戶兵營新選朴惡東年參拾伍乙巳本務安…妻縣居(訓)鍊奉事尹璋自己婢妾子婢永玉年貳拾貳戊午父訓鍊奉事尹(右行細字)/璋母同婢永珍(左行細字)…”(20면 2-3행)

☞ 사례 : “第八新里戶幼學金南煥年參拾玖辛丑本彥陽…仰役奴毛乙金年貳拾陸甲寅父正兵彥發(右行細字)/母戶婢夏非故(左行細字)逃亡奴秩奴德云年拾肆…”(6면 3-6행)

☞ 사례 : “戶縣居前持平尹善道奴山守年柒拾肆丙寅父戶婢兒叱山故(右行細字)/母戶婢先介故(左行細字)…”(1면 3행)

☞ 사례 : “戶鎮安居幼學林士丑奴亡世年陸拾庚辰父私奴方回故(右行細字)/母戶婢丁非故(左行細字)妻班婢彥春年伍拾陸甲申父私奴千貴故(右行細字)/母戶婢旣化故(左行細字)”(3면 2-3행)

☞ 사례 : “戶縣案付內奴云世年伍拾玖辛巳父同奴君才故(右行細字)/母同婢奉接故(左行細字)妻京居訓鍊奉事李溫婢禿非年陸拾庚辰父私奴光世故(右行細字)/母同婢允西非故(左行細字)”(13면 11-12행)

- ⑦ 남편이 없는 婦女 戶首는 반드시 ‘獨女’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오가작통법 준행 이후에 작성된 호적 자료에서 ‘寡婦’나 ‘寡女’로 기재하고 있는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⁴⁴⁾ 한편 獨女와 상응하여 ‘夫無’라는 표기도 발견되고 있다.⁴⁵⁾

42) 파악 가능한 전체 가호 144戶 중 私奴婢戶가 무려 93戶(64.1%)나 된다.

43) 상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京 44戶(47.3%), 전라도 37戶(39.8%; ‘縣居’, 즉 해남현만은 16戶·17.2%), 경기도 7戶(7.5%), 충청도·경상도 각 2戶, 강원도 1戶 등이다. 따라서 상전이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 거주하고 있었음(51戶·54.8%)을 본다.

☞ 사례 : “戶獨良女高召史年肆拾貳戊戌父水軍弘切故祖水軍豆里故(右行細字)/曾祖不知故外祖水軍羅沙里故(左行細字)率松得奴愛奉年拾參丁卯…”(11면 8-9행)

☞ 사례 : “戶京居前監司黃謹中婢獨女亂花年肆拾貳戊戌父同奴大口(右行細字)/母良女戊心(左行細字)夫無率子善伊年拾亥辛酉”(11면 8-9행)

⑧ ‘向化’인이 확인되는데, 1609년도 울산호적에서와 마찬가지로 本籍을 ‘黑龍江’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역시 중국·북방계 귀화인으로 보인다. 한편 ‘도이상’조를 보면, 이들이 奴婢로 인식·취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례 : “戶京畿道呂州居幼學閔儀中奴千ト年伍拾壹己丑父私奴千連故(右行細字)/母同婢貴今故(左行細字)妻向化寶今年肆拾肆丙申父向化崔汎(右行細字)/母向化太進(左行細字)率子卜男年貳拾壹己未戶向化崔汎年柒拾柒癸亥本黑龍江父向化汎文故祖向化卜同故曾祖向化(右行細字)/玉丁故外祖向化李骨干故本黑龍江(左行細字)妻向化太進年柒拾伍乙丑本黑龍江父向化李元石故祖向化李同故曾祖(右行細字)<이하, 破損>”(18면 12-15행)

⑨ ‘鮑’라는 역명을 기재한 자가 나타나고 있다. 鮑魚, 즉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 용어로 여겨진다. 한편 본 사례를 통하여 그 역이 대대로 世襲되었을 뿐 아니라, 鮑役을 진 집안끼리 内婚을 하고 있는 점에서 白丁과 마찬가지로 賤役에 해당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이는 본 사례에서 역명 ‘鮑’ 앞에 ‘良’이라는 신분 표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하튼 해남현과 같이 沿岸에 위치한 군현의 호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 役種 가운데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 사례 : “戶良鮑丁內ト年陸拾玖辛未本靈岩父鮑大君故祖鮑龍儼故曾祖鮑(右行細字)/目1伊故外祖張順必故本龍城(左行細字)妻良鮑欣今故本海州父鮑莫同故祖鮑順(右行細字)/命故曾祖鮑守外故(左行細字)/外祖鮑孟(右行細字)/斤故本黃州(左行細字)率子鮑允男年貳拾庚申”(18면 10-12행)

⑩ 역명(?)을 ‘老儒’로 표기한 경우가 발견되는데,⁴⁴⁾ 이는 1606년도 단성호적에서 역명을 ‘兩班’으로 표기한 사례처럼 특이하다.

☞ 사례 : “戶老儒崔士立年伍拾陸甲申本全州父學生乾祖前訓導溥光曾(右行細字)/祖學生裕外祖箕子殿參奉崔淵本(左行細字)新豊妻朴氏年丙申籍密陽…”(20면 3-4행)

이상 1639년도 해남호적의 특징을 살펴 본 바, 이 호적은 노비 유형에 관한 가장 많은 용례를 담고 있는 자료가 아닌가 본다. 특히 이 자료를 비롯하여 1606년·1630년도 산음호

44) 한편, ‘獨女’ 기재 사례는 1609년·1672년도 울산호적과 1663년도 漢城府 北部호적 등에서 발견된다. 대략 오가작통법 준행을 이후 ‘獨女’ 대신 ‘寡婦’·‘寡女’ 표기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45) 한편, 1609년과 1672년도 울산호적과 1630년도 산음호적, 1663년도 한성부 북부호적, 그리고 1672년 金化縣호적 등에서는 ‘夫無’와 상반되는 ‘妻無’라는 표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46) 戶籍 관련 문서에서 역명을 ‘老儒’로 기재한 사례는 1669년 光陽縣에서 발견한 鄭紙의 準戶口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박물관 도록-고문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9, 110쪽). 한편, 본 도록에서는 老儒를 “나이가 많아 校生에서 면제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 및 1606년도 단성호적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戶奴婢’의 경우, 그 성격에 대하여 대략 ① ‘전통 가옥의 구조에서 생성된 ‘戶底’·‘戶下’ 노비의 약칭’⁴⁷⁾ ② ‘主人을 대신하여 여러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는 노비’(=‘首奴’·‘舍晉’[마름]), 그리고 ③ ‘外方에 거주하면서 主家의 土地·農莊을 관리하는 노비’(=‘庄奴’)⁴⁸⁾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성격의 호노비는 일종의 ‘挾戶’가 되겠는데,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호적들에서 확인되는 호노비 사례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아래 예시한 사례-④·⑤]. 반면 사례-⑥~⑨에 准하면, ④와 ⑤ 성격에 오히려 가깝다.

이처럼 호적에서의 호노비 기재는 그 용례·해석이 다양한 편이라 하겠는데,⁴⁹⁾ 이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 사례-④ : “戶訓鍊參奉襄保年陸拾參甲辰生本金海…戶奴杏男年拾玖戊子生父戶奴介同母良(右行細字)/女甘乙伊(左行細字)戶婢汗春年參拾柒庚午生父張安金母(右行細字)戶婢莫金(左行細字)戶奴世龍年肆拾玖戊午生父先文母(右行細字)/戶婢延月(左行細字)逃亡戶奴義伊年伍拾壹丙辰生父不知母(右行細字)戶婢玉石未(左行細字)逃亡戶婢貴喜年參拾柒庚午生父戶奴孫石母(右行細字)/良女玉只逃亡(左行細字)”(1606년도 산음호적 草谷里 1번지 戶)

☞ 사례-⑤ : “戶通政大夫金汝虎年伍拾柒甲戌生本清道…加現妾石召史年肆拾辛卯生本山陰…戶奴溫伊年陸拾參戊辰生父班奴億春(右行細字)/母班婢二古(左行細字)”(1630년도 산음호적 南面 毛好山里 51번지 戶)

☞ 사례-⑥ : “戶忠清道懷德居宋廷戶奴貴日年參拾丁丑生父寺奴卡伊(右行細字)/母私婢守今(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參

47) 安承俊, 「16-18世紀 海南尹氏家門의 土地·奴婢所有 實態와 經營—海南 尹氏古文書를 中心 으로—」, 『清溪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89, 187쪽. 한편 전형택은, 분석 자료로 보면 18세기 전반기(1723) 이후의 호노비는 ‘상전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양역 차출되는’ 성격의 노비로 이해된다고 한다(‘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양태—광주 전의이씨 문의공파 종가 소장 고문서의 사례 분석—」, 『朝鮮時代史學報』 15, 조선시대사학회, 2000, 137-145쪽). 따라서 이 또한 일종의 ‘戶底’노비로 분류할 수 있겠다.

48) ④와 ⑤는 다소 시기적 차이를 두나 그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 두 가지 성격의 규명은 李榮薰, 앞의 논문(1994), 24-27쪽. 한편 전형택의 경우, 18세기 초(1711)까지의 호노비를 ‘외방에 거주하는’ 노비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위의 논문, 같은 쪽). 李榮薰이 제시한 ③ 성격의 노비로 분류할 수 있겠다.

49) 戸奴婢는 주로 私奴婢戶와 率奴婢의 부모 世系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 솔노비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으로는 그 성격을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겠고, 그 단서는 사노비 戸의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상기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떤 경우는 ‘□□居[上典名]戶奴·戶婢’로 기재한 반면, 어떤 경우는 ‘○○居[상전명]奴·婢’로만 기재하고 있어, 그 정확한 사정을 이해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더군다나 사례-⑨, 梁健의 戶婢로 기재된 春介의 경우 상전 梁健의 호적 내에서는 逃亡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班婢’로 기재되었던 母가 ‘戶婢’로 나타나고 (“…婢春介年參拾柒庚午生父私奴叢從(右行細字)/母戶婢守今(左行細字)逃亡…”) 있는 것이다(『단성호적』下, 853쪽-8행).

拾丁丑生父(右行細字)/母(左行細字)本不知…戶晉州居李大邦戶奴允起年參拾丁丑生父奴悉音同(右行細字)/母婢介今(左行細字)妻司宰監婢云花年參拾丁丑生父(右行細字)/母(左行細字)/寺奴云伊(右行細字)<左行空欄>…戶京中居李雄戶奴銀福年肆拾參甲子生父寺奴法花(右行細字)/母私婢閑德(左行細字)妻良女召史年伍拾玖戊申生父母(右行細字)/不知(左行細字)…戶忠清道牙山居洪大誠戶奴銀貴年肆拾玖戊午生父寺奴卡伊(右行細字)/母私婢鐵今(左行細字)"(1606년도 산음호적 梧耳谷里 2·5·6·8번 째 戶)
 ☐사례-④ : "戶晉州居正兵李秋里戶奴龍伊年肆拾肆癸亥生父奴多勿沙里(右行細字)/母班婢風代(左行細字)妻兪欣戶婢介月年肆拾壹丙寅生父奴萬石(右行細字)/母良女乞代(左行細字)"(1606년도 단성호적, 下 850쪽-2-3행)
 ☐사례-⑤ : "戶京畿居姜文佑奴鄭文年肆拾柒庚申生父私奴鄭哲(右行細字)/母班婢英代(左行細字)妻奉事梁健戶婢春介年參拾柒庚午生父私奴李從(右行細字)/母班婢守今(左行細字)"(1606년도 단성호적, 下 854쪽-5행)
 ☐사례-⑥ : "戶公洪道牙山居洪大成戶奴萬守年陸拾柒甲子生父寺奴邊伊(右行細字)/母□德伊(左行細字)妻無戶加現京中居尹寶元戶奴貳金年拾貳己未生父萬守(右行細字)/母不知(左行細字)戶加現京中居尹寶元戶奴難生年肆拾辛卯生父恩貴(右行細字)/母婢志介(左行細字)率弟奴戒男年參拾貳己亥生父母(右行細字)/上同(左行細字)"(1630년도 산음호적 北面 梧耳谷里 6-8번 째 戶)

한편, 본 자료에서는 尹善道(1587-1671)를 비롯한 海南 尹氏가문의 노비가 다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7세기 이 가문의 노비 소유·경영 실태를 살필 수 있는 古文書(和會文記, 身貢文記 등)가 전하고 있어⁵⁰⁾ 그 가치를 더해 준다.

8)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大帳⁵¹⁾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No.19315】

顯宗 4년(1663·癸卯式·康熙 2) 漢城府의 北部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으로, 작성 당시 城內 5部 각坊에 편입되지 않은 '有契無坊' 지역 15개 契의 682戶를 수록하고 있다. 1896년 新호적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한성부 지역의 호적대장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연구자의 분석이 있어 왔는데,⁵²⁾ 그 주요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50) 해남윤씨가의 고문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古文書集成』 3 (1986)으로 영인·간행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安承俊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앞의 논문).

51) 卷頭題는 '康熙貳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이다.

52) E. W. Wagner, Social Stratification in Seventeenth Century Korea: Some Observations from a 1663 Seoul Census Register, *Occasional Papers on Korea* v.1, 1974(「17세기 朝鮮의 社會階層—1663년의 서울 北部戶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梨花女大 史學科研究室 編譯, 『朝鮮身分史研究』, 법문사, 1987에 번역 수록) ;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조성윤, 「17세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 『鄉土서울』 54, 1994 ; 崔珍玉, 「北部帳戶籍」, 『역사분야 연구논문집 '9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金靜賢, 「17세기 庶孽 職役 變動에 대한 一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吉田光男, 「一六六三年『漢城府北部戶籍』に見える身分標識と身分・職役」,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日本 : 山川出版社, 1997에 所收. 한편, 본 자료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에서 1995년에 영인 간행되었다(『서울학 사료총서』 6

- ① 호적 말미에 ‘도이상’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신분별 또는 직역별 집계는 보이지 않고 각 契別 戶數만을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다.
- ② 統·戶의 No. 표기가 없는 점은 앞 자료들과 그 양상이 동일하나, 각 가호마다 別行하여 ‘戶’字를 상단 여백에 起頭하고 있는 점은 다르다.
- ③ 世系는 左右 細字雙行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과 구별 없이 기재하고 있다.
- ④ 里契가 시작되는 ‘戶’의 상단 여백에 里契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⑤ 모든 ‘戶’는 ‘不准印’이라는 표기로 마감하고 있다. ‘不准’이란 전 式年에 成籍된 호적에 准[의거 즉, 對照]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印’[글]은 文記나 어떤 내용의 끝에 붙이는 套式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660년에 성적된 庚子式 북부호적과 대조하지 않았음” 정도로 이해된다.⁵³⁾

☞ 사례 : “戶私奴漁夫高敬年柒拾上典幼學李益夏父班奴蚕孫母班婢桮孫妻班婢香伊年陸拾參父私奴豐孫母班婢生伊率丁義萬年甲午賤不准印”(合掌里契 7번째 戶)

- ⑥ 노비 유형에 대한 다양한 용례가 보이는데, 앞에서 살핀 자료들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는 ‘家直’·‘家舍直’·‘亭子直’·‘亭舍直’·‘行廊’ 노비 등을 들 수 있다.

☞ 사례 : “戶習讀鄭文度家直奴乞男年陸拾…”(衍禧宮契 1번째 戶)

☞ 사례 : “戶進士李碩茂家舍直婢東古里年肆拾伍…”(望遠亭契 66번째 戶)

☞ 사례 : “戶幼學李賀亭子直奴明遠年貳拾壹…”(衍禧宮契 5번째 戶)

☞ 사례 : “戶習前府尹李時述亭舍直奴丁生年肆拾…”(合掌里契 77번째 戶)

☞ 사례 : “戶故生員尹振坡行廊婢女京年丁亥生…”(合掌里契 59번째 戶)⁵⁴⁾

- ⑦ 역시 노비 유형과 관련하여 ‘率奴婢秩’·‘使喚奴婢秩’·‘家內使喚奴婢秩’·‘外方奴婢秩’·‘□□居奴婢秩’·‘逃亡奴婢秩’ 등과 같은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 사례 : “戶通訓大夫前行陰竹縣監李彥哲年戊午本全州…使喚奴婢秩奴乞男年戊寅…外方奴婢秩麻田奴一伊年戊午…逃亡秩婢禮節年戊午…”(細橋里契 3번째 戶)

☞ 사례 : “戶幼學安廷燭年肆拾玖本竹山…家內使喚婢廣介年肆拾捌…外方奴婢秩金城婢月從一所生婢順生年肆拾參…逃亡秩徐川奴希男奴希仁癸未年逃亡…”(城山里契 14번째 戶)

☞ 사례 : “戶幼學金世珍年參拾參本善山…率奴婢秩奴玉金年參拾陸…水原居奴婢秩奴乞金年參拾貳…全州居奴婢秩婢禮業年參拾貳…山陰居奴婢秩奴四邊年伍拾伍…逃亡秩奴憲世年參拾陸壬戌逃奴生伊年肆拾陸甲戌逃顯賤不准印”(加佐洞契 1번째 戶)

- ⑧ 寡女나 寡婦 대신 ‘獨女’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핀 호적들과 같다. 그런데

– 규장각편 II –).

53) 이러한 투식은 1523년 한성부에서 발급한 準戶口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양반신분인 戶首가족은 ‘准’했던 반면, 솔노비는 ‘不准’했음을 표기하고 있다(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172쪽)).

54) 이처럼 行廊에 거처하는 노비 또한 일종의 ‘挾戶’가 되겠다.

양반층 寡婦戶의 경우, 亡夫의 本籍 및 世系를 ‘家翁邊’이라는 표기 아래 기재하고 있는 독특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 사례 : “戶良獨女貴一年伍拾伍父正兵金希傑三祖不知率子私奴無赤年拾伍主幼學安墩作賤不准印”(合掌里契 14번째 戶)

☞ 사례 : “戶故學生李之奎妻全氏年肆拾壹本安東…家翁邊學生李之奎本咸平父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津通訓大夫京圻右道水運判官楚材祖嘉善大夫行忠淸道觀察使…”(城山里契 28번째 戶)

⑨喪妻 또는 未婚으로 妻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妻無’ 또는 ‘妻未娶’로 기재하고 있다.

☞ 사례 : “戶私奴青盲等漢年捌拾上典睦時尹父良人高岳秀母名不知妻無賤不准印”(細橋里契 23번째 戶)

☞ 사례 : “戶幼學李起華年貳拾伍本廣州父故副司果吉元…外祖將仕郎濟用監參奉尹興莘本坡平妻未娶…”(合掌里契 3번째 戶)

⑩ 住居 양상과 관련된 용례로 ‘時入’과 ‘新造入’ 등이 나타나고 있다.⁵⁵⁾

☞ 사례 : “戶崔應吉時入驛吏從知年拾玖本晉州父水夫應吉…”(望遠亭契 38번째 戶)

☞ 사례 : “戶私婢獨女祿只時入子千男年參拾參上典通政大夫工曹參議金光燦父私奴還卜母班婢祿只妻無賤不准印”(望遠亭契 63번째 戶)

☞ 사례 : “戶私奴元甫寬家時入砲保金貴得年參拾壹本陽川…”(望遠亭契 72번째 戶)

☞ 사례 : “戶出身李碩福時入出身崔業年甲子生本慶州…”(甑山里契 22번째 戶)

☞ 사례 : “戶新造入別武士甄好男年肆拾肆本密陽…”(望遠亭契 74번째 戶)

⑪ 역시 주거 양상 및 가옥 구조를 살필 수 있는 ‘俠戶’가 기재되어 있다.⁵⁶⁾ 그런데 主戶와 挾戶의 관계는 모두 父子간이며, ‘戶’가 連接하여 등재되고 있었다.

☞ 사례 : “戶私奴奩金年陸拾…妻私婢愛女年伍拾玖…”(延署契 20번째 戶) // “戶私奴奩金俠戶率子班奴信伊年參拾父班奴奩金母班婢愛禮…”(延署契 21번째 戶)

☞ 사례 : “戶福昌君奴仲賢年伍拾肆…妻私婢德今年伍拾伍上典湖安君渙…”(延署契 29번째 戶) // “戶私奴仲賢率子俠戶班奴承天年貳拾玖上典湖安君渙父班奴仲賢母班婢德今…”(延署契 30번째 戶)

⑫ 호적의 기재 양식 및 내용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 바로 望遠亭契 109번째 가호로 등재된 亭舍直婢 天承의 ‘戶’에서였다. 天承의 상전을 밝히는 부분에 무려 34자의 설명을 기재하였던 것이다. 풀이인 즉, “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果였던 故 李希顏의 침 劉召吏가 사망하여 대신 希顏의 嫡子인 幼學 穎薰의 이름에 입적시킨…”의 뜻이 되겠다.⁵⁷⁾ 亭舍지기[直]로 있던 婢 天承에 대한 소유권 변동 사실

55) 본 호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時入’戶의 분석 및 성격 규명에 대해서는 林學成, 앞의 논문(2004) 참조.

56) 본 호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俠戶’의 분석 및 성격 규명에 대해서는 林學成, 앞의 논문(1998) 참조.

57) ‘名字入籍’ 중 ‘名字’의 뜻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그리고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름’ 정도로 풀이하는 게 적당할 듯하다. ‘名字’에 대한 풀이는 李榮薰, 앞의

을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公證的 효력을 마련하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 사례 : “故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果李希顏妾劉召史身死代希顏嫡子幼學碩薰名字入籍亭舍直婢天承年肆拾肆父私奴愛男母班婢者斤介率奴丁海年拾賤不准印”

⑬ 본 북부호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戶’의 신분을 판별하고 있는 점이다. 즉, 우선은 크게 ‘顯’(상급 兩班신분), ‘作’(일반 양반신분 및 中人, 内侍, 平民신분), ‘案’(公奴婢), ‘賤’(私奴婢)의 4등급으로 나누고,⁵⁸⁾ 다음 戶내 소유노비의 유무 및 戶首와 배우자의 신분 차이(즉, 良 · 賤 및 公 · 私賤 간의 交婚 등)에 따라 ‘顯賤’ · ‘作賤’ · ‘作案’ · ‘案賤’ · ‘賤作’ · ‘賤案’ 등으로 분별 · 기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분류 기준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大帳의 家戶 분류 기준 및 양상

| 戶首의 신분 / 職 · 役 | 양태 | | 身分內婚 | 戶首와 배우자의 婚姻 양태 | | | |
|-------------------|--|------|------|----------------|---------|------|--|
| | 有 | 無 | | 交婚 | | | |
| | | | | 娶良女 | 娶私婢 | 娶公婢 | |
| 顯 | 宗親, 品職者, 諸屬衛, 出身, 生員, 進士, 幼學, 寡婦(氏) 등 | ‘顯賤’ | ‘顯’ | ‘顯’ | ‘顯作’(?) | - | |
| 作 | 品職者, 内侍, 諸衛屬, 出身, 軍役者, 別武士, 書吏, 保人, 驛吏, 驛保, 砲手, 匠人, 良漁夫, 寡婦(氏, 召史) 등 | ‘作賤’ | ‘作’ | ‘作’ | - | ‘作賤’ | |
| 案 | 宮奴 · 婦, 府奴 · 婦, 內奴 · 婦, 署奴 · 婦, 羅將 등 | ‘案賤’ | ‘案’ | ‘案’ | ‘案作’(?) | ‘案賤’ | |
| 賤 | 私奴 · 婦, ○○直奴 · 婦, 書吏, 驛吏, 砲手, 盲人 등 | - | ‘賤’ | ‘賤’ | ‘賤作’ | - | |

아울러 각 양상별로 대표적 사례들을 摘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顯」 : ② “戶幼學沈杭年伍拾肆本青松父宣敎郎行順陵參奉廷英祖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恪…外祖將仕郎安宗仁本廣陵妻朴氏年伍拾貳籍慶州父奉正大夫行成均館典籍大益祖通政大夫慶州府尹弘美…外祖宣敎郎李涤根本完山顯不准印”(城山里契 55번지 戶) *戶首 幼學(‘顯’) + 妻 氏(‘顯’) ☞ ‘顯’

• 「顯賤」 : ④ “戶通訓大夫前行陰竹縣監李彥哲年戊午本全州父通政大夫前行金城縣令濱…外祖通政大夫行

논문(1994)을 참조할 수 있다.

58) 1523년 한성부에서 발급한 幼學 沈守平의 準戶口에서도 이러한 분류 표기가 발견된다. 즉, 심수평(21세)과 그 妻(東萊鄭氏, 18세)에 대한 기재 말미에 ‘顯’字를, 그리고 솔노비에 대한 기재 말미에 ‘賤’字를 각기 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전경목, 앞의 논문, 172쪽). 다만 심수평과 같은 家率 구성의 경우, 북부호적에서는 호적 말미에 ‘顯賤’으로 함께 표기한 반면, 이 준호구에서는 ‘顯’과 ‘賤’을 別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恩津縣監林景佑本恩津妻李氏年戊午生父宣務郎容…外祖承議郎行成均館典籍兼春秋館記事官趙杰本平壤率子幼學蔥幼學薰使喚奴婢秩奴夏男年戊寅…外方奴婢秩麻田奴一伊年戊午…逃亡秩婢禮節年戊午庚寅年正月逃…顯賤不准印”(細橋里契 3번 째 戶) *戶首 前縣監(‘顯’) + 妻 氏(‘顯’) + 使喚·外方·逃亡奴婢(‘賤’) ↯ ‘顯賤’

•「作」: ④ “戶內禁衛任繼重年貳拾捌本豐川父禦侮景信祖幼學天老曾祖學生遜外祖兼司僕金得守本金海妻李氏年貳拾陸本完山父前兼司僕蕃祖前萬戶繼男曾祖副司正德寶外祖副司果李得龍本咸興作不准印”(望遠亭契 32번 째 戶) *戶首 (‘作’) + 妻 氏(‘作’) ↯ ‘作’

④ “戶射手李得成年貳拾陸本晉州父射手明一祖幼學成建曾祖學生世唱外祖前司果白世會本黃州妻良女李召史年貳拾參本忠州父驛卒先生祖忠順衛彥弼曾祖名不知外祖保人張春安本汚川作不准印”(弘濟院契 5번 째 戶) *戶首 射手(‘作’) + 妻 良女 召史(‘作’) ↯ ‘作’

•「作案」: ④ “戶匠人朴賢龍年乙巳生本密陽父幼學奉伊祖幼學光國曾祖不知外祖朴六吉本密陽妻署婢莫正年乙巳生父母不知率子匠人朴安介年貳拾參作案不准印”(造紙署契 3번 째 戶) *戶首 匠人(‘作’) + 妻 署婢(‘案’) ↯ ‘作案’

•「作賤」: ④ “戶忠壯衛吳千萬年伍拾貳本海州父保人可希祖忠順衛春瑞曾祖學生信富外祖定虜衛林應善本砥平妻私婢同德年伍拾貳主縣監李馨植父不知母同婢春女率子私奴微云年柒歲作賤不准印”(阿耳古介契 6번 째 戶) *戶首 忠壯衛(‘作’) + 妻 私婢(‘賤’) + 子 私奴(‘賤’) ↯ ‘作賤’

④ “戶前郡守金晉輝妾宋召史年戊辰生本禮山父觀象監參奉得天祖訓鍊院奉事萬年曾祖訓鍊奉事必守外祖忠順衛李敬信本廣州率奴命監年參拾婢烈烈年玖婢壽女年拾逃奴德金年肆拾捌婢戊春年伍拾貳辛丑九月二十日逃亡作賤不准印”(加佐洞契 21번 째 戶) *戶首 召史(‘作’) + 率奴婢·逃亡奴婢(‘賤’) ↯ ‘作賤’

④ “戶良獨女貴一年伍拾伍父正兵金希傑三祖不知率子私奴無赤年拾伍主幼學安璈作賤不准印”(合掌里契 14번 째 戶) *戶首 良女(‘作’) + 率子 私奴(‘賤’) ↯ ‘作賤’

•「案」: ④ “戶獨女府婢義仁年陸拾伍父府奴乞伊母府婢全作率子府奴永達年伍案不准印”(阿耳古介契 2번 째 戶) *戶首 府婢(‘案’) + 子 府奴(‘案’) ↯ ‘案’

•「案賤」: ④ “戶壽進宮奴玉立年貳拾伍父戒民母班婢夜伊妻私婢連伊年貳拾貳上典洪茂績父池男母班婢莫介案賤不准印”(加佐洞契 6번 째 戶) *戶首 宮奴(‘案’) + 妻 私婢(‘賤’) ↯ ‘案賤’

④ “戶內奴天立年陸拾肆父班奴玉亨母班婢德只妻西學婢六月年肆拾玖父私奴彥男母班婢愛自婢禮成年肆拾肆父班奴玉善母班婢德只居海州一所生婢雲業年貳拾參父私奴康天母班婢禮成居海州二所生婢成業拾柒居海州案賤不准印”(延曙契 7번 째 戶) *戶首 內奴(‘案’) + 妻 西學婢(‘案’) + 外方婢(‘賤’) ↯ ‘案賤’

•「賤」: ④ “戶私奴李莫孫年伍拾玖上典韓仁友父憲世母希介妻私婢化牙伊年伍拾壹上典判書洪重普父私奴德男母私婢者斤禮賤不准印”(衍禧宮契 7번 째 戶) *戶首 私奴(‘賤’) + 妻 私婢(‘賤’) ↯ ‘賤’

•「賤案」: ④ “戶私奴松立年伍拾柒上典幼學具遠俊父私奴丁孫母班婢山伊德妻內婢正介年伍拾參父私奴春化母內婢玉只賤案不准印”(衍禧宮契 12번 째 戶) *戶首 私奴(‘賤’) + 妻 公婢(‘案’) ↯ ‘賤案’

•「賤作」: ④ “戶私奴趙戒信年伍拾陸上典幼學薛時望父私奴愛春母私婢德伊妻良女環承年伍拾玖本金海父正兵金德武祖曾祖不知外祖良人申德成本平山賤作不准印”(水色里契 2번 째 戶) *戶首 私奴(‘賤’) + 妻 良女(‘作’) ↯ ‘賤作’

이상, 1663년도 한성부 북부호적은 외방 군현의 호적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상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이 자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외방 군현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국가 규정이 제대로 준행되었을 首都에서 담당·성적한 호적이라는 점이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9) 1672년 原襄道金化縣戶籍大帳⁵⁹⁾ 【하바드大 엔칭도서관 소장; No.TK4049.65/1144】

顯宗 13년(1672·壬子式·康熙 11) 강원도 金化縣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의 낙장 일부(총 39면)를 편철한 것이다. 卷首와 卷末이 낙장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의 좌·우측이 떨어져 나갔고, 일부 면들은 상단 또는 하단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는 등 자료의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조선시대 호적대장 중 거의 찾기 힘든 강원도 지역의 것이라는 점, 아울러 오가작통법이 준행되기 바로 전 식년의 호적이라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라 하겠다.⁶¹⁾ 확인 가능한 ‘戶’는 대략 230여 戶 정도인데(한 면에 대체로 7·8戶 가량 등재), 주요 특징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각 가호마다 別行하고 있는 점은 1663년도 한성부 북부호적과 같으나, ‘戶’字를 상단 여백에 起頭하지 않고 본문의 윤곽선 내에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 ② 四祖 世系는 대체로 左右 細字雙行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戶’의 경우 세계를 細字雙行이 아닌 본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 ③ 앞의 1663년도 한성부 북부호적과 마찬가지로 洞里가 시작되는 ‘戶’의 상단 여백에 里名(일부는 面名 併記)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순서대로 편철된 것이 아니기에 각 里의 전체 양상을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⁶²⁾
- ④ 모든 ‘戶’는 ‘己酉戶口相准印’과 ‘壬子自首印’이라는 표기로 마감하고 있다. ‘戶口相准’이란 前式年에 成籍된 호적과 서로 대조했음을 뜻하며, ‘自首’는 이번 호적 조사 때 신고(戶口單子 납부 등)하여 今식년 호적에 처음 入籍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59) 책제는 卷首가 落張되어 알 수 없으나, 호적 본문의 상단 여백에 ‘康熙十一年九月日原襄道金化縣壬子帳’으로 기재하고 있다. 한편, 자료에서 통상의 江原이란 호칭 대신 ‘原襄’을 도명으로 기재하고 있었던 까닭은, 1665년 江陵都護府에서 딸과 사위 등이 전염병에 걸린 아비를 산에 매장하여 주인 사건이 발생하여 강릉을 降號시키고 襄陽을 넣어 도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顯宗實錄』 권10, 6년 8월 丁卯條 ; 『顯宗實錄』 권11, 7년 2월 癸丑條 ; 『輿地圖書』 江原道 監營, ‘建置沿革’條).

60) 전체 39면 중 상단 또는 하단의 파손이 심한 것이 각 7면씩이다.

61) 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단 1편이 확인되고 있다. Susan Shin, The Social Structure of Kümhwa County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v.1, 1974(「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라는 제목으로 『朝鮮身分史研究』에 게재).

62) 자료에 기재된 里名을 邑誌와 대조해 본 결과, 동일 面에 속한 里가 서로 이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면에 속한 里들이 앞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己酉’는 전 식년인 1669년이 되겠고, ‘壬子’는 당해년인 1672년이 된다. 이와 같은 표기 방식은 오가작통법 준행 이후에 작성된 호적에서는 常套化되고 있다.

☞사례 : “戶驛吏文大立年參拾壹壬午生本江陵…己酉戶口相准印”(18면 2번째 戶)

☞사례 : “戶私奴廉大進年伍拾伍戊午生本密陽前居楊州壬子(1672년-인용자註)來接…主楊州居生員梁業父保人三男(右行細字)/三祖不知(左行細字)母故班婢禮今妻班婢春玉年肆拾捌己丑生四祖(右行細字)/不知(左行細字)母故良女一春率姪子班奴四立年貳拾肆己丑生壬子自首印”(16면 4번째 戶)

⑤ 전 식년 성적 이후 타처에서 移來하여 금화호적에 入籍한 자의 경우, ‘前居+(지명)+(간지)+來接’처럼 상세하게 그 사정(前 거주지, 移來 년도)을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상투적으로 ‘來接’[이래하여 (남의 집에) 잠시 동안 머뭄]이란 표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이들의 정착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이들 來接人戶는 모두 ‘自首印’으로 마감하고 있다. 63)

☞사례 : “戶流來閑良羅大吉年肆拾壹壬申生本全州前居金城辛亥(1671년)來接…壬子自首印”(22면 5번째 戶)

☞사례 : “戶正兵金仁俊年陸拾捌乙巳生本鐵原前居淮陽壬子來接…壬子自首印”(38면 3번째 戶)

⑥ 侍養하고 있는 寡母를 ‘偏母’로 표기하고 있다.

☞사례 : “戶趙士建故代子步兵儀民年拾肆己亥生本鎮海父吏曹吏士建祖通政大夫(右行細字)/順元曾祖兼司僕仁信(左行細字)偏母李召史年肆拾伍戊辰生本平康父保人應立祖通政大夫春陽曾祖(右行細字)/保人云男外祖保人全德弘本平康(左行細字)率弟吏曹書吏之民年拾壹壬寅生己酉戶口相准印”(1면 4번째 戶)

⑦ 앞에서 살핀 호적들과 마찬가지로 ‘妻無’라는 표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⑧ 1639년도 해남호적과 동일하게 ‘買得’노비(2건)와 ‘衿得’노비(1건)의 기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깃득’노비의 경우 ‘妻邊衿得’처럼 누구로부터 획득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사례 : “戶私奴張得男年柒拾癸卯生本鎮川主抱川居忠義衛李震碩…率買得婢年拾肆己亥生…”(14면 4번째 戶)

☞사례 : “戶校生朴之栢年陸拾參庚戌生本鷄林…妻尹氏年陸拾壹壬子生本肆坡平…妻邊衿得奴蠶金年參拾參庚辰生…”(16면 2번째 戶)64)

63) 한편, 1630년도 산음호적에서도 ‘來接人’이라는 표기가 확인된다(北面 釜谷里 50번째 戶). 특히 본 호적에서는 ‘來接人’ 가호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조선시대 주민들의 住居 이동 양상을 밝히는 데 주요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주민들의 주거 이동 양상을 고구한 연구로는 林學成, 「朝鮮後期 丹城縣 住民의 居居住地移動에 관한 研究-1678년도 丹城縣戶籍大帳의 分析-」,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이 참조된다.

64) 그런데, 妻邊衿得奴인 蠶金은 同里(里名 不明)에 獨立戶 戶首로 나타나고 있다(“戶私奴金蠶金年參拾參庚辰生本金海主本縣居校生朴之栢…” : 16면 5번째 戶). 그렇다면 호적상에 二重登載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蠶金가족이 거주한 ‘戶’가 上典의 戶底집이었던 데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호적대장을 분석하다보면 이와 같은 私奴婢의 이중등재 양상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林學成, 「朝鮮後期 戶籍臺帳에 보

⑨ 사냥에 쓰이는 매[鷹]를 조련시키는 자에 대한 칭호로 여겨지는 ‘鷹師’로役名을 기재한 자가 발견되고 있다. 강원도 산간 군현의 호적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사례라 본다.

☞ 사례 : “戶鷹師宋得忠年參拾柒丙子生本鎮川父鷹師禮先祖保人希仁曾祖成均(右行細字)妻良女鄭召史年參拾參庚辰生本草溪…率弟保人得吉年參拾陸丁丑生率弟業儒時亨年貳拾參庚寅生率奴承立年貳拾伍戊子生婢承禮年拾玖甲午生…”(19면 4번째 戶)

☞ 사례 : “戶鷹師保李天男故代妻良女崔召史年伍拾壹壬戌生本殷栗前居谷山丁未來接…”(27면 4번째 戶)

⑩ 일부 軍役戶의 경우 아들(또는 姪子)을 保人으로 등재하면서 ‘率子同戶保○○’로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여기에서 ‘同戶保’는 ‘同戶矣保人’을 축약한 표기로 보이며, ‘同戶’는 父가 자신의 正軍인 ‘戶’를 가리키는 것이겠다.⁶⁵⁾ 따라서 이와 같은 ‘戶’의 구조 역시 ‘主戶’(戶首=父=正軍)-‘挾戶’(奉足=子·姪子=保人)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 “戶騎兵申莫立年肆拾柒丙寅生本寧越…率子同戶保業山年拾癸卯生…”(21면 4번째 戶)

☞ 사례 : “戶御營軍鄭京一年陸拾癸丑生本長鬱…率異姓姪子同戶保崔先益年參拾肆己卯生本通川妻良女崔召史年貳拾肆己丑生本平康…”(25면 2번째 戶)

☞ 사례 : “戶御營軍申承祿年肆拾貳辛未生本寧越…率子同戶保永雲年貳拾肆己丑生…率子同戶保知雲年貳拾參庚寅生…”(39면 2번째 戶)

이상, 1672년도 금화호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강원도 지역의 호적 자료가 희소한데다가, 본 자료만이 지닌 독특한 특징이 일부 확인되기에 연구자의 분석·활용 정도에 따라 자료로써의 가치를 提高시킬 수 있다고 본다.

10) 1672년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⁶⁶⁾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No.14999-3】

상기 금화호적과 마찬가지로 오가작통법 준행 바로 직전인 顯宗 13년(1672·壬子式·康熙 11)에 울산부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이다. 1609년도의 울산호적이 남아있어 비교 및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⁶⁷⁾ 자료의 분량은 상당하여 전체 4,290여 戶가 확인되고 있는데,⁶⁸⁾ 주요

이는 私奴婢의 二重登載相에 대하여, 『古文書研究』 3, 1992 참조.

65) 한편 본 호적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군역호는 이 사례와 동일하게 父·子가 正軍과 保人の役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同戶’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同戶’를 표기한 경우와의 차이가 해명되려면 추후 구체적인 고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혹시 이의 경우는 아들이 父가 아닌 他人(他戶)의 保人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66) 卷首가 낙장되어 表題는 알 수 없다. 본문 중 상단 여백에 ‘壬子式’이라는 표기 정도만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호적의 명칭을 추정·복원한다면 ‘康熙壬子式蔚山府戶籍大帳’ 정도가 적당하겠다.

특징을 적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각 가호마다 別行하고 있으며, '戶'字를 상단 여백에 起頭하지 않고 본문의 윤곽선 내에 기재하고 있다.
- ② 世系를 左右 細字雙行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다.
- ③ 洞里가 시작되는 '戶'의 상단 여백에 里名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方位面名은 사라지고 1609년도 호적에서의 里名이 面名으로 기재되고 있다.⁶⁹⁾
- ④ 1609년도 호적에서와 마찬가지로 統·戶의 No. 표기 없이 10家마다 作統하고 있다. 다만 1609년처럼 '戶統+[戶首]…'의 형식이 아니라, '統戶+[戶首]…'로 기재되고 있는 점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 ⑤ 모든 '戶'는 '己酉戶口相准'과 '壬子自首'라는 표기로 마감하고 있다.
- ⑥ '戶'의 유형으로 '陞戶'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구된 바가 없다.
- ⑦ '獨女'와 '妻無' 기재 사례가 적지 않아 확인되고 있다.
- ⑧ 역시 '豆毛岳'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府內面(?) 白蓮岩里 말미에 「頭毛惡」欄을 별도로 마련하여 集錄하고 있다. 이에 등재된 두모악 가호는 총 187戶로 분석된다.⁷⁰⁾

이상, 1672년도 울산호적은 統·戶 No. 표기만 없을 뿐 1675년 이후 오가작통법에 의해 작성된 호적과 近似함을 살필 수 있다. 이는 1663년도 한성부 북부호적과 1672년도 금화호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1675년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 10건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비교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 살필 1666년도 제주호적의 양식·특징도 미리 포함시켰다.

종합 결과의 양상은 첫째, 호적에 등재된 각 '戶'의 구별 방식은 連이어 쓰는 방식에서 '戶'마다 行을 달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 轉變의 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중엽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호적대장에서의 '戶' 구별 방식은 '連書'→'別

67)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韓榮國, 앞의 논문(1981) ; 李光奎, 「朝鮮朝 後期의 社會構造와 變動 –蔚山地域 戶籍을 中心으로 –」, 『韓國文化』 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4 등이 확인된다.

68) 韓榮國, 앞의 논문(1985), 324-325쪽.

69) 조선시대 방위면 체제의 성격 및 변화상에 대해서는 金俊亨,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참조.

70) 韓榮國, 앞의 논문(1981), 815쪽.

行’(17세기 중엽)→‘別行하여 戸No. 기재’(1675년 이후)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둘째, ‘戶’ 말미에 붙이는 套式 역시 17세기 중엽을 전후로 無·有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17세기 중엽 이전에는 호적대장을 작성할 때 前式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대조(즉 ‘相准’)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대조했더라도 그 사실을 표기(즉, 套式化)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일까? 그런데,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규정 및 양식 그 어디에도 전 식년의 호적대장을 대조하라는 국가의 지침(?)은 없었다.⁷¹⁾ 이에 각 군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전 식년 호적대장을 대조하는 불편·수고를 堪耐하면서까지 新호적대장을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정비·강화되면서 호적대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전 식년의 호적대장을 相准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는데, 본 글에서 살핀 호적들에 따르면 대체로 17세기 중엽 이후의 양상이라 추정된다. 이에 대해 좀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자. 『經國大典』 이후에 작성된 법전류 그 어디에서도 호적대장의 작성 양식을 규정한 조문을 볼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實자료를 통하여 그 규정의 시행 시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우선 호적대장(1차 자료)의 경우 ‘相准’, 특히 전 식년의 호적대장을 대조(‘□□戶口相准’)하였음을 기재하고 있는 자료로는 1672년도의 금화와 울산 호적이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이 된다. 다음, 호적대장의 기재 내용을 거의 그대로 謄寫하여 발급한 준호구 또한 호적대장의 기재 내용을 알 수 있는 적합한 자료(2차 자료)가 되겠다. 이의 경우, ‘□□戶口相准’로 표기하고 있는 자료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1675년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⁷²⁾ 즉, 호적 작성시 전 식년 호적을 相准하는 방식으로 전변하는 시기는 1672년경

71) 『經國大典』(1485년) 권3 「禮典」, ‘戶口式’을 보면 호적대장의 작성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리고 있다. “戶某部某坊第幾里(外則 稱某面某里)住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妻某氏年甲本貫四祖(宗親 錄自己職銜 妻四祖. 儀賓 錄自己職銜四祖. 尚某庶人 錄自己及妻四祖. 壓人不知四祖者 不須盡錄)率居子女某某年甲(女婿則 幷錄本貫)奴婢雇工某某年甲”. 즉, 작성 양식을 세세히 예시하면서도 말미에 ‘…相准(印)’이라는 투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同卷의 ‘准戶口式’을 보면, “某年月日本府(外則 稱本州本郡)考某年成籍戶口帳內某部某坊云云奴婢某某年甲等准給者…<이하, 署押 규정 생략>”에서와 같이 말미에 ‘…等准給者’이라는 투식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물론 조선 중기의 준호구 거의가 이 투식대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1523년 沈守平준호구 <漢城府 준급>, 전경목, 앞의 논문, 172쪽 ; 1570 · 1573년 金彥祥준호구<鳳山郡 준급> ; 1609년 金鑄준호구<鳳山郡 준급> ; 1666년 成震翊준호구<沃川郡 준급> ; 1666년 宋三錫준호구<漢城府 준급>. 이상, 『古文書』 8, 서울大學校奎章閣, 1992에 所收 ; 1666년 鄭昌址준호구<星州牧 준급>.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25-227쪽 ; 1669년 鄭紝준호구<光陽縣 준급>. 『박물관 도록-고문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110쪽 ; 1672년 金命說준호구<扶安縣 준급>. 『扶安金氏愚藩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28쪽).

72) 즉, 1675년 沈益成준호구<한성부 준급> “康熙十四年 月 日漢城府/考乙卯成籍戶口帳內…等王子戶

이 아닌가 여겨진다.

셋째, 조상의 世系를 좌우 細字雙行으로 기재하는 방식 또한 17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변화하고 있었다. 즉, 1639년도 해남호적까지는 細字雙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지만, 1663년 한성부 북부호적 이후로는 대체로 본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 1672년도 금화호적은 세자쌍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표 3〉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작성된 호적의 양식·특징 비교



口准給者”(『古文書』 8, 494-495쪽) ; 1675년 李夏鎮준호구<한성부 준급> “康熙十四年四月 日漢城府/考乙卯成籍戶口帳內…等壬子戶口准給者”(『古文書』 9, 1993, 82-84쪽) ; 1675년 金璠준호구<扶安縣 준급> “(康熙十四)年五月 日扶安縣戶口/考乙卯成籍戶口帳內…等壬子戶口相准者”(『扶安金氏愚燔古文書』, 28-30쪽) 등이다. 한편 正祖 10년(1786)에 편찬한 『典律通補』 4책 「別編」, 「準戶口式」을 보면 “年(初帖平行 低一字)號(印)幾年某月日(間字)漢城府(外則 稱某邑 府牧郡縣隨稱)考(平行)某年(當式年干支)成籍戶口帳內某府某坊某契第統(間字)第戶(間字)云云(依單子書 但連書)等某年(去式年干支)戶口準給者…<이하, 署押 규정 생략>”에서처럼, 변화된 투식대로 준호구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내용 자료 | '戶' 구별 | '戶' 말미의 套式 | 世系 기재 | 주요 특징의 확인 與(○) · 否(x) | | | | | | | |
|----------------|-----------|------------------------|-----------|-----------------------|----|----------|------------|----------|---|--|--|
| | | | | 白丁 | 百姓 | 挾人 挾戶 | 민집 [虛戶] | 戶奴 戶婢 | 기타 양상 | | |
| 1528년 안동호적 | 連書 | 없음 | 細字 雙行 | ○ '新白丁' | ○ | x | x | x | * '作不納' 표기. | | |
| 1606년 산음호적 | " | " | " | ○ | ○ | x | ○ | ○ | * '都已上'條에 良 · 賤別 분류. | | |
| 1606년 단성호적 | " | " | " | ○ | ○ | x | x | ○ | * 役名으로 '兩班' 표기. * '飢民立案' · '收養遺棄兒' 奴婢 기재. | | |
| 1609년 울산호적 | " | " | " | ○ | ○ | ○ | ○ | x | * 作統(10家). * '已上'條에 良 · 賤別 분류. * '獨女' · '妻無' 표기. * '向化'人 · '降倭'人 기재. | | |
| 1609년 연양호적 | " | " | " | x | x | x | x | x | * 作統(10家). | | |
| 1630년 산음호적 | " | " | " | ○ | ○ | ○ | ○ | ○ | * '別戶' · '加戶' · '加現戶' 표기. * '妻無' 표기. | | |
| 1639년 해남호적 | " | " | " | ○ | ○ | x | x | ○ | * '都已上'條에 職役別 분류. * 役名으로 '老儒' 표기. * '買得' · '衿得' · '同' 奴婢 기재. * '獨女' · '父無' 표기. * '向化'人 기재. * 世系에 '故' 표기. | | |
| 1663년 한성부호적 | 別行 | 있음 '不准印' | 본문과 동일 | x | x | ○ | x | x | * '顯' · '作' · '案' · '賤' 등 신분 표기. * '時入' · '新造入' 표기. * '獨女' · '妻無' 표기. * '家直' · '亭子直' · '行廊' 奴婢 표기. | | |
| 1666년 제주호적 | 連書 | 없음 | " | x | ○ | x | x | ○ | * 婿 · 婦 妥 奴妻 · 婦夫('借入'?)의 四祖世系 기재. * 世系에 '各居'와 '故' 표기. | | |
| 1672년 금화호적 | 別行 | 있음 '戶口相准印' '自首印' | 細字 雙行 | x | x | x | x | x | * '來接'人 · '同戶保'人 기재. * '妻無' · '偏母' 표기. * '買得' · '妻邊衿得' 奴婢 표기. | | |
| 1672년 울산호적 | " | 있음 '戶口相准' '自首' | 본문과 동일 | x | x | x | x | x | * 作統(10家). * '陞戶' 표기. * '獨女' · '妻無' 표기. | | |

한편, 1666년도 제주목 호적대장의 경우는 육지 군현 호적의 양상과는 적지 않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戶'를 別行하지 않고 連書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戶' 말미의 套式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은 17세기 중엽 이전의 호적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면 1666년도 제주목 호적대장 斷片의 분석을 통하여, 17세기 중엽 제주지역에 서의 호적 작성 방식 및 기재 · 표기 양상, 그리고 주민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III. 1666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 斷片

이 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밝혔듯이, 이 斷片 자료는 지금까지 전혀 발견된 바 없는 제주도 지역의 조선시대 호적대장 원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배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 및 가치가 적지 않다 하겠다. 우선 이 자료가 작성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겠다.⁷³⁾ 1908년 정월 제주의 光山金氏 후손 몇 명이 濟州官衙를 찾아가 戶籍庫에 보관된 호적대장을 考閱한 후, 자신들의 先祖가 등재된 부분 몇장을 謄寫하였다고 한다. 등사의 목적은 제주도에서 世居한 광산김씨의 族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본 단편도 원본에서 떨어져 나온 落張이 아니라 원본을 등사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장처인 국립제주박물관에 협조를 구하여⁷⁴⁾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한 電送 사진(말미에 수록한 '사진 자료' 참조)을 보았더니,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던 전시실에서의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다. 역시 紙質이나 書體, 사용 筆記具 등 모든 면에서 원본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한편, 또 다른 등사본에 대해서도 궁금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자료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행이도 族譜⁷⁵⁾에 그 자료들이 옮겨져 있었다. 이를 다시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⁷⁶⁾

- ② 1489년 弘治二年己酉式年戶籍大帳：“濟州東道道衣灘里戶 缺 夫金繼忠年貳拾柒癸未本光州父千戶致南故祖千戶堅老故曾祖都染領同正逸故外祖千戶玄德義故本咸德妻召史年 缺 本旌義父千戶李德美缺 一男貴泉年壹己酉 缺”
- ④ 16세기 중엽 戶籍大帳：“戶禦侮將軍金世珍年戊辰本光州父禦侮將軍貴泉故祖禦侮將軍忠武衛中部副司直繼忠故曾祖千戶致南故外祖秉節校尉趙好仁故本大元妻召史年丁卯本大元父顯信校尉鄭仲明故祖修義副尉承舜故曾祖修義右軍副司正秩睦故外祖禦侮將軍鄭思謙故 缺”
- ④ 1591년 萬曆十九年辛卯式年戶籍大帳：“戶展力副尉金守珍年參拾陸丙辰本光州父禦侮將軍世應故祖禦侮將軍貴泉故曾祖禦侮將軍繼忠故外祖高繼光故本濟州妻召史年參拾參己未本濟州父禦侮將軍梁自洋故祖顯信校尉舜善故曾祖彰信校尉胤鶴故外祖金乙宗故本金寧子景鳳年伍丁亥戶婢崔台年貳拾壬申 以外 奴婢之口 恐傷煩 未及贍出”
- ④ 1666년 康熙五年丙午式年戶籍大帳：“戶幼學金繼敞年參拾丁丑本光州父將仕郎前 肅寧殿參奉晉鎔故祖學生景鳳故曾祖學生守珍故外祖通政大夫高景鵠故本濟州妻金氏年貳拾壹丙戌本金寧父折衝將

73) 이하 설명은 金啓淵 선생과의 인터뷰 자료에 의거함.

74) 多忙한 공무 중에서도 불구하고 자료를 촬영하여 전송해 준 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제근 선생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드린다.

75) 족보는 心齋 金錫翼 선생(1885~1956)이 1942년에 편찬한 『光山金氏世譜』(5권 6책)이다.

76) 移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添削·修整을 가하였는데, '원본→등사본→족보 수록본'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된 것을 보다 원본 내용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의도이다.

軍嘉善大夫監牧官大吉各居祖崇政大夫行知中樞府使兼五衛都摠府都摠管萬鑑故曾祖 贈資憲大夫工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利弘故外祖禦侮將軍康大仁故本咸德 獻

족보에는 총 5건의 호적자료를 옮겨 놓았는데, 1건은 본 1666년도 호적자료에 등재된 金繼高의 ‘戶’라 상기 소개에서 제외시켰다. 자료는 제주목 호적대장 중 모두 光山金氏의 ‘戶’만을 摘出한 것으로, 시기는 成宗 20년(1489·己酉式·弘治 2)·16세기 중엽·宣祖 24년(1591·辛卯式·萬曆 19)·顯宗 7년(1666·丙子式·康熙 5) 등이다. 1908년까지 제주 관아⁷⁷⁾ 戶籍庫에는 조선 전·중기의 호적대장 일부가 남아 있었음을 말해 준다. 비록 족보에 轉載된 것이기는 하나, 이처럼 시기가 오랜 호적대장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더군다나 제주 지역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위 4건의 내용은 모두 當該 년도의 호적대장을 등사한 후, 이를 다시 족보에 전재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마치 準戶口처럼 광산김씨 일개 가호의 것만을, 더군다나 가족원이 아닌 자들(소유 노비 등)에 대한 부분은 결락시키고 있다. 그런데 ④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戶婢 1구를 적은 다음, “이 外의 노비 인구를 (모두 기재한다는 것은) 그 번잡하고 까다로움이 걱정되기에 謄出하지 않았”(以外 奴婢之口 恐傷煩 未及謄出)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단편은 노비 부분까지 그대로 등사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자료 ④의 序頭를 보면 거주지가 明記되어 있다. 원 호적 자료에도 기재되었던 것인지는 의문이나, 여기에 적힌 제주목 東道(面?) 道衣灘里[도려]⁷⁸⁾가 이들 광산김씨의 世居地였음을 알려 준다. 족보에서는 이 지역이 족보 제작 당시(1940년대 초)의 舊左面 上道里라는 것을 註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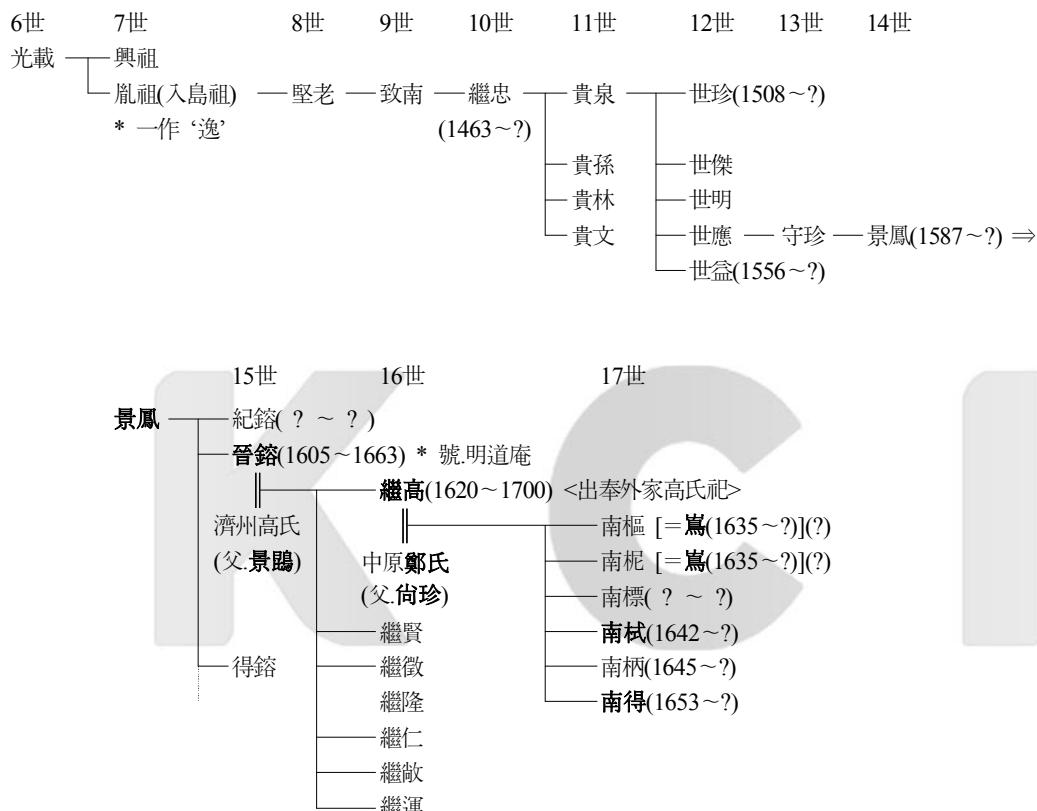
이로써, 본 글에서 소개·분석하려는 단편이 제주목 道衣灘里 호적의 등사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크기는 가로 49.3cm×세로 70.5cm이며, 상단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은 훼손 상태가 심하다. 그리고 좌우 양쪽도 잘려져 있다(본 글 말미에 부록한 【사진】 참조). 이밖에 원본의 成籍 년대는 자료에 등재된 광산김씨 인물들로써 확인 가능하다(〈도 1〉 참조). 특히, 仁祖代 肅寧殿參奉을 지낸 明道庵 金晉鎔(1605~1663)의 생년이 본 자료의 작성 년

77) 조선시대 濟州牧의 호적대장은 濟州營(兵馬水軍節制營)과 濟州牧 관아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히 濟州營에는 大靜·旌義縣의 호적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李元鎮, 『耽羅志』<1653년> ‘倉庫’條, 戶籍庫, “…大槩三邑(濟州牧·大靜縣·旌義縣을 말함-인용자註)之籍 合置營中…自今以後 本州(濟州牧을 말함-인용자註) 亦具兩件 营牧各藏一件…”).

78) 자료로부터 시기가 가장 가까운 『耽羅志』에는 ‘坊里’條가 없어 살필 수 없었고, 18세기 중엽(英祖년간)에 편찬된 『海東地圖』의 「濟州三縣圖」에서 ‘道衣灘里’가 확인된다. 위치는 제주목의 동남쪽에 표시되어 있다. 한편, 18세기 후반(正祖년간)에 편찬된 『濟州邑誌』 ‘坊里’ 조에는 ‘左面 上·下道里’로, 1789년에 편찬된 『戶口總數』에서는 ‘金寧面 上·下道里’로 나타나고 있다.

대를 비정하는 결정적 단서였다. 물론 자료에는 金晉鎔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아들 繼高가 47세 '庚申生'으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庚申年은 바로 1620년이 되며, 이로부터 46년 후는 바로 '1666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자료에 등재된 모든 생존 인물의 干支와 년령을 환산하면 단 1명을 제외한 38명 모두가 1666년과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 1〉 濟州 光山金氏 明道庵 晉鎔(1605~1663) 일가의 가계



비고) * 진하게 표시한 名字는 호적에서 확인되는 자들임.

이상, 본 자료의 등사 경위를 비롯하여 지역·작성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지질·서체 등에서는 많은 變改가 있었으나, 그 내용·양식 등의 면에서는 1666년에 成籍된 제주목 호적대장 그 자체로 간주해도 큰 오류가 없을 것이다. 우선 자료를 판독한 것과, 교감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判讀 및 校勘

【판독】

※ 판독상의 符號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1) ？ : 글자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 2) [] : 자료상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등사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살린 경우.
- 3) [*] : 원문에서 잘못된 글자 및 차오를 바로잡은 경우(밑줄 부분).
- 4) □ : 하단 부분이 마멸된 경우(글자 수 불확실).
- 5) □ : 상단 부분이 마멸된 경우(글자 수 불확실).
- 6) □ : 마멸된 글자 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글자 수만큼 표시).

〈앞 부분 脱落〉

- 1행: 所近鎮僉使以智故曾祖禦侮將軍漢傑故外祖折沖[*衝]將軍天字故本濟州子挺兌年參拾陸辛未
- 2행: 次子挺河年貳拾柒庚辰女子金氏年參拾柒戊辰[*庚午]次女金氏年貳拾伍壬午校生金尙錢參拾捌
- 3행: 己巳本金寧父留鄉別監景仁故祖訓鍊院奉事留鄉座首？故曾祖留鄉座首運秋故外祖展力副尉
- 4행: 景銓故本金寧校生梁山峻年貳拾柒庚辰本濟州父通政大夫智男祖宣務郎主簿進海故曾祖通政大夫
- 5행: 定方故外祖守門將高孝修故本濟州金召吏[*史]年肆拾陸辛酉本不知父首戶長纏緝各居祖司僕禦侮將軍仁
- 6행: 邦故曾祖貢生用？故外祖戶[長□□□故本□□]孫子校生金濟年拾參甲午次孫校生金淳年拾壹丙申高召吏[*史]年貳拾肆癸未
- 7행: 本濟州父通政大夫應希故祖展力副尉仲良故曾祖不知外祖金仁中故戶婢寶陪年陸拾玖戊[戊父私]
- 8행: 奴ト之故母良女荷叱石故戶奴今廻年伍拾丁巳父私奴終廻故母私婢今代故戶婢朴德年陸拾貳乙巳[父]□
- 9행: 故母私婢伊心故戶奴得福年玖戊戌父私奴銀斤故母私婢得未各居戶奴禾伊福年貳拾丁亥父私奴甫千各[居]
- 10행: 母良女伊代各居戶婢恩德年參拾丁丑父私奴斤卜故母良女莫杜故內贍寺奴金千年貳拾參甲申父私奴金廻各居[祖]
- 11행: ？奴終卜故曾祖不知母同寺婢千台各居外祖寺奴溫千各居內資寺婢承？年拾肆癸巳父同寺奴？好故祖寺奴興月
- 12행: [故曾祖]不知母良女德生各居外祖高德男故戶校生金繼高年肆拾柒庚申本光州父通政大夫高景鵠故[本濟州祖]
- 13행: [通訓大]夫長連縣監以智故曾祖留鄉別監漢傑故外祖留鄉別監金彥弘故本金寧父將仕郎[前肅寧殿參奉晉]
- 14행: [鎔故妻鄭氏]年伍拾參甲寅本中原父留鄉別監尙珍故祖留鄉別監仁賢故曾祖留鄉座首光[琛]故外祖□
- 15행: [高夢□故]本濟州子校生南柾年貳拾伍壬午次子校生南柄年貳拾貳乙酉次子內資寺奴南[得]年拾肆癸[已母同]
- 16행: 寺婢夫今故外祖私奴夫石故戶奴連福年參拾肆癸酉父戶奴連廻故母良女仇代故戶婢吾乙生年[伍]拾壹丙辰[父]□
- 17행: 乙同故母良女德福各居戶婢伐伊莊年陸拾丁未父寺奴斤孫[故]母戶婢伐伊心故奉常寺奴石福年肆拾肆癸亥[父]□
- 18행: 奴石崇故曾外祖不知母寺[婢]甘朱故戶奴連弘年拾伍壬辰父百姓金永廻各居母戶婢連生各居戶校生金鳴
- 19행: 年參拾貳乙亥本光州父校生繼高各居祖將仕郎肅寧殿參奉晉鎔故曾祖學生景鳳故外祖留鄉別監
- 20행: 鄭尙貞故本中元[*原]良女德下年捌拾陸辛巳父百姓宋仁必故祖曾外祖不知戶奴伊男年伍拾肆癸丑父
- 21행: 百姓金自寶故母戶婢伊心故戶奴連万年貳拾丁亥父百姓金永廻年肆拾肆癸亥本金寧父百姓目弓山故祖曾祖

22행: 不知外祖百姓金草廻故母戶婢連生年肆拾伍壬戌父百姓金長同各居母戶婢連德故同生戶婢有德年參拾肆癸酉戶婢

23행: 甫難生年貳拾柒庚辰父百姓金春立各居母戶婢吾乙生各居金召吏[*史]年參拾陸辛未本金寧父百姓金春立各(居)

24행: 祖百姓張福各居曾祖百姓自賣故外祖校生高益厚故戶婢毛來生年貳拾捌己卯父寺奴高

25행: 故母戶婢伐來莊各居戸僧入內資寺奴春石年參拾柒庚午父寺奴丁男各居祖(寺奴)

<뒷 부분 脫落>

2. 자료의 특징

1666년도 제주목 호적이 육지 군현의 호적대장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은 앞의 〈표 3〉에서 간단히 지적하였다. 이제, 본 자료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成籍되었기에 統·戶 No.는 보이지 않는다.
- ② 각 '戶'는 連書하고 있으며, '戶'字를 大書함으로써 구별하고 있다.
- ③ 先祖('良': 四祖, '賤': 父母)의 世系를 좌우 細字雙行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다. 단, 戶首의 媚·婦 및 소유노비의 婢夫·奴妻 등으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도 四祖(노비의 경우 母까지 포함) 世系를 반드시 기재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 사례 : "...校生梁山峻年貳拾柒庚辰本濟州父通政大夫智男祖宣務郎主簿進海故曾祖通政大夫定方故外祖守門將高孝嶺故本濟州金召史年肆拾陸辛酉本不知父首戶長嫗緝各居祖司僕禦侮將軍仁邦故曾祖貢生用[...]故外祖戶[長□□□故本□□]..."(자료의 5-6행)

☞ 사례 : "...奉常寺奴石福年肆拾肆癸亥(父)□奴石崇故祖曾外祖不知母寺[婢]甘朱故..."(자료의 17-18행)

- ④ '百姓'을 역명으로 표기한 자가 확인되고 있다. 대체로 호적상에서의 '百姓' 표기는 17세기 중엽 이후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앞의 〈표 3〉 참조).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와는 달리 '百姓' 표기의 유적이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사례 : "...戶校生金鳴年參拾貳乙亥本光州...良女德卜年捌拾陸辛巳父百姓宋仁必故祖曾祖外祖不知戶奴伊男年伍拾肆癸丑父百姓金自寶故母戶婢伊心故戶奴連万年貳拾丁亥父百姓金永廻年肆拾肆癸亥本金寧父百姓目...山故祖曾祖不知外祖百姓金草廻故母戶婢連生年肆拾伍壬戌父百姓金長同各居母戶婢連德故...戶婢甫難生年貳拾柒庚辰父百姓金春立各居母戶婢吾乙生各居金召史年參拾陸辛未本金寧父百姓金春立各(居)祖百姓張福各居曾祖百姓自賣故外祖校生高益厚故..."(자료의 18-24)

- ⑤ '戶奴婢' 또한 적지 않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본 자료의 3개 '戶'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 모두 '戶奴'·'戶婢'로만 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서의 '戶奴(婢)'는

정황상 ‘戶矣奴(婢)’[戶의 노비]의 뜻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즉, 소유관계를 표기한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의 독특한 노비 기재 방식이었지 않나 여겨진다.

☞사례 : “…戶婢寶陪年陸拾玖戊戌父私奴卜之故母良女荔叱石故戶奴今廻年伍拾丁巳父私奴終廻故母私婢今代故戶婢朴德年陸拾貳乙巳父[]故母私婢伊心故戶奴得福年玖戊戌父私奴銀斤故母私婢得未各居戶奴禾伊福年貳拾丁亥父私奴甫千各居母良女伊代各居戶婢恩德年參拾丁丑父私奴斤卜故母良女莫杜故…”(자료의 7-10행)

☞사례 : “戶校生金繼高年肆拾柒庚申本光州…戶奴連福年參拾肆癸酉父戶奴連廻故母良女仇代故戶婢吾乙生年伍拾壹丙辰父[]乙同故母良女德福各居戶婢伐伊莊年陸拾丁未父寺奴斤孫故母戶婢伐伊心故…”(자료의 12-17행)

⑥ 1639년도 해남호적과 마찬가지로 世系를 밝히면서 이미 사망한 자는 반드시 ‘故’字를 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생존하고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各居’라고 표기하고 있다(동거하고 있으면 ‘各居’ 표기 대신 연령 기재).

☞사례 : “戶校生金鳴年參拾貳乙亥本光州父校生繼高各居祖將仕郎肅寧殿參奉晉鎔故曾祖學生景鳳故外祖留鄉別監鄭尙眞故本中原…戶奴連万年肆拾丁亥父百姓金永廻年肆拾肆癸亥本金寧父百姓目下山故祖曾祖不知外祖百姓金草廻故母戶婢連生年肆拾伍壬戌父百姓金長同各居母戶婢連德故…”(자료의 18-22행)

⑦ 戸首의 가옥 일부를 ‘借入’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奴妻나 婢夫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례 : “…戶婢恩德年參拾丁丑父私奴斤卜故母良女莫杜故[借入?]內贍寺奴金千年貳拾參甲申父私奴金廻各居(祖)[]奴終卜故曾祖不知母同寺婢千台各居外祖寺奴溫千各居[借入?]內資寺婢承[]年拾肆癸巳父同寺奴[]好故祖寺奴興月(故曾祖)不知母良女德生各居外祖高德男故…”(자료의 10-12행)

이상, 1666년도 제주호적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기존 호적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 즉, 호적에 등재된 모든 인물은 반드시 戸首와의 혈연적 사회·경제적 관계를 이름 앞에 기재하는 게常例인데, 본 자료에서는 그러한 상례가 결여된 경우가 일부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校生 金尙錢(2행) · 校生 梁山峻(4행) · 金召史(5행) · 高召史(6행) · 內贍寺奴 金千(10행) · 內資寺婢 承[](11행) · 奉常寺奴 石福(17행) · 良女 德卜(20행) · 金召史(23행) 등이다. 등재된 인물 및 가족 관계 등으로 볼 때, 이들은 女婿 · 子婦 · 妻 · 奴妻 · 婢夫 · 借入 등으로 추정되는 자들이다. 자료를 등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脫字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다.

IV. 17세기 중엽 濟州牧의 住民 양상

1. 戶首와 妻, 그리고 四祖

자료에는 총 4개 '戶'가 등재되었다. 사례가 얼마 되지 않기에 각 '戶'별로 설명하겠다 (<표 4> 참조).

<표 4> 1666년도 濟州牧戶籍 斷片에 보이는 戶首 및 妻의 四祖

| '戶'의 순서 | 戶首 | 戶首의 四祖 | | | |
|-----------|---------------------|--------------------------|----------------------|------------------|--------------------|
| | | 父 | 祖 | 曾祖 | 外祖 |
| 첫째 '戶' | 金□ (?/?/?) | ? | ? | ? | ? |
| 둘째 '戶' | 金繼高(47/ 光州/校生) | 高景鵠(故/濟州 /通政大夫) | 以智(故/-/通訓 大夫長連縣監) | 漢傑(故/-/ 留鄉別監) | 金彥弘(故/金寧/ 留鄉別監) |
| | | 晉鎔(故/-/將仕郎 肅寧殿參奉) *生父 | 景鳳(故/-/學生) | 守珍(故/-/ 展力副尉) | 高景鵠(故/濟州 /通政大夫) |
| 셋째 '戶' | 金 岩(32/ 光州/校生) | 繼高(47/-/ 校生) *各居 | 晉鎔(故/-/將仕 郎肅寧殿參奉) | 景鳳(故/-/ 學生) | 鄭尙眞(故/中原/ 留鄉別監) |
| 넷째 '戶' | 春石(37/無/ 僧人內資寺奴) | 丁男(?/-/ 寺奴) *各居 | ? | ? | ? |

| '戶'의 순서 | 妻 | 妻의 四祖 | | | | 비고 | 자료의 상태 |
|-----------|---------------|------------------|-------------------|------------------|-------------------|------------------------|----------|
| | | 父 | 祖 | 曾祖 | 外祖 | | |
| 첫째 '戶' | 高氏(?/ 濟州) | ? | 以智(故/-/ 附近鎮僉使) | 漢傑(故/-/ 禦侮將軍) | 天宇(故/濟州/ 折衝將軍) | - | 前部 缺損 |
| 둘째 '戶' | 鄭氏(53/ 中原) | 尙珍(故/-/ 留鄉別監) | 仁賢(故/-/ 留鄉別監) | 光□(故/-/ 留鄉座首) | ?(?/濟州/?) | 戶首: 外家(濟州高 氏) 繼後奉祀. | 完全 |
| 셋째 '戶' | 無 | - | - | - | - | 金繼高(둘째'戶')의 子. | " |
| 넷째 '戶' | ? | ? | ? | ? | ? | - | 後部 缺損 |

비고) 인명에 附記한 () 안의 내용은 '연령/본관/직역' 등을 뜻함. 단, '無'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뜻함.

- 1) 첫째 '戶' : 전반부가 결여되어 戶首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率女를 '金氏'라고 기재한 것에서 호수의 姓이 金이라는 정도만이 확인될 뿐이다. 자료의 1 행에 기재된 以智(祖) · 漢傑(曾祖) · 天宇(外祖) 등은 妻의 三祖로 보인다. 둘째 '戶'를 통하여 처의 姓貫이 濟州高氏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둘째 '戶' : 자료 상태가 양호하여 '戶'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호수는 光州(光山) 金氏인 校生 繼高로 47세이며, 처는 中原(忠州)鄭氏로 53세였다. 그런데 호수의 四祖

에서 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 즉, 高景鵠(父) · 以智(祖) · 漢傑(曾祖)을 三祖로 기재(자료의 12행)한 다음, 外祖 기재에 이어 ‘將仕郎…’직을 지닌 자를 또 다시 ‘父’로 기재(자료의 13행)하였기 때문이다. 金氏 호수의 부가 高氏로 나타난 것도 이상하거나, 부를 이중으로 등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자료가 混綴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후손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의문이 해결되었다. 바로 金繼高가 외가인 濟州高氏家로 繼後奉祀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아울러 직역만 보이고 이름을 알 수 없었던 金繼高의 生父가 金晉鎔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족보에서도 繼高를 “出奉外家高氏祀”로 적고 있는 것이다.⁷⁹⁾

- 3) 셋째 ‘戶’ : 둘째 ‘戶’와 마찬가지로 전모가 확인되는 ‘戶’이다. 호수는 金繼高의 아들 校生 善으로 나이는 32세였다. 외조 역시 中原鄭氏 尚眞(‘尚珍’으로도 기재)으로 나타난다. 연령으로 보아 成婚은 하였을 텐데, 妻는 보이지 않는다. 褒妻하였지 않나 여겨진다.
- 4) 넷째 ‘戶’ : 후반부가 결여되어 호수와 父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수는 春石으로 37세였다. 그런데 직역으로 기재한 ‘僧入內資寺奴’가 흥미롭다. 원래 內資寺에 소속된 奴였는데, 出家(僧入)한 듯하다.

2. 族員과 食口

자료 상태가 나쁜 넷째 ‘戶’를 제외한 나머지 ‘戶’는 자녀와 食口(食率) 파악이 가능하다. 자료에 등재된 家戶가 미미하기는 하나, 17세기 중엽 제주지역의 가족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표 5〉 참조).

1) 첫째 ‘戶’ : 戶首와 혈연 및 혼인으로 맺어진 族員으로 妻, 子(36세, 27세) · 女(37세, 25세) 각 2명씩, 孫子 2명 등 6명은 확연히 드러난다. 문제는 아무런 표기 없이 등재된 男 · 女 각 2명씩이다. 이들은 무슨 연고로 金□□의 戶內에 등재 · 거주하였을까? 남자는 金寧金氏(38세)와 濟州梁氏(27세)로 모두 校生을 직역으로 하고 있었다. 연령과 직역으로 보아 호수의 女婿들이 아닌 가 추측해 보았다. 아울러 관계 미상인 金召史(46세) · 高召史(24세) 두 여인은 호수의 子婦로 추측된다. 다만 金召史가 호수의 1남(挺兌, 36세)보다 10살이나 연상인 점에서 이렇게 추측하는 게 다소 불안하기는 하다. 그렇다면 호수의 妻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전통시대 제주도의 특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女多男少’ 현상에서 기인한 畜妾 풍습과 관련된다.⁸⁰⁾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호적관련 자료(준호구 ·

79) 인터뷰 과정에서 繼高라는 이름도 高氏의 계통을 이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80) 물론 유교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17세기 제주 지역에서의 重婚 양상을 놓고 妻 · 妻관계가

호구단자 및 호적중초)에서도 축첩한 사례가 쉽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도 여겨지나, 중이나 거지조차 妻妾을 거느릴 정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⁸¹⁾ 여하간 호수를 포함한 족원 전체는 11명으로 집계된다. 다음, 仰役人은 奴·婢 각 3구씩 6명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본 제주호적에 등재된 私奴婢는 모두 '戶奴·戶婢'로 표기되어 있다. 이밖에 호수와의 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노·비 각 1구씩이 등재되었는데, 둘 다 內瞻寺 소속이었다. 奴妻나 婢夫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借入'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⁸²⁾ 역시 제주지역의 호적관련 자료를 보면 借入者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첫째 '戶'의 전체 식구는 차입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7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표 5〉 1666년도 濟州牧戶籍 斷片에 보이는 家內食口

| '戶'의 순서 | 戶首 | 家內食口 | | | | | | 計 | 비고 | 자료의 상태 |
|-----------|--------------|---|---|---------------------|--|---|-----------------------------|-------------------------|--|----------|
| | | 男 | 女 | 計 | 男 | 女 | 計 | | | |
| 첫째 '戶' | 金 | • 子:挺兗(36/-/無), 挺河(27/-/無) • 女婿(?):金尚錢(38/金寧/校生), 梁山峻(27/濟州/校生) • 孫子:金濟(13/-/校生), 金淳(11/-/校生) | • 妻: 高氏(?) • 女: 金氏(37), 金氏(25) • 子婦(?):金召史(46/不知) 高召史(24/濟州) | 6/4 (10) [11] | • 戶奴: 今廻(50), 得福(9), 禾伊福(20) | • 戶婢: 賀陪(69), 朴德(62), 恩德(30) | 3/3 (6) [17] | [10/7] [17] | 借入(?): 內瞻寺 奴 金千(23), 內瞻寺婢 承 [14] ☞ 計: 1/1(2) | 前部 缺損 |
| 둘째 '戶' | 金繼高 (47세) | • 子:南斌(25/-/校生), 南柄(22/-/校生), 南得(14/-/內資寺 奴)☞母 寺婢(故) /外祖私奴(故) | • 妻:鄭氏(53/中原) | 3/1 (4) [5] | • 戶奴: 連福(34), 連弘(15) • 婢夫(?): 石福(44세/ 奉常寺奴) | • 戶婢: 吾乙生(51), 伐伊莊(60) | 3/2 (5) [7/3] [10] | 戶首: 金胤(둘째 '戶')의 父. | 完全 | |
| 셋째 '戶' | 金鳴 (32세) | 無 | • 祖妻?:德卜(86/-/無/ 良女) | 0/1 (1) [2] | • 戶奴: 伊男(54), 連 万(20) • 婢夫: 金永道(44세/ 金寧/百姓) | • 戶婢: 連生(45), 有德(34), 甫難生(27), 毛來生(28) • 奴妻(?): 金召史 (36/ 金寧) | 3/5 (8) [4/6] [10] | 戶首: 金繼高(둘 째 '戶')의 子. | " | |
| 넷째 '戶' | 春石 (37세) | ? | ? | ? | ? | ? | ? | ? | - | 後部 缺損 |

비고) ① 인명에 附記한 () 안의 내용은 '연령/본관/직역' 등을 뜻함. 단, '無'는 기재가 없는 것을 뜻함.
② 族員과 仰役인의 計에서의 'a/b'는 '男/女' 口數를 말하며, () 안의 수치는 남녀 합을 말함. 단,
[] 안의 수치는 戶首를 포함한 경우임.

명확히 인식·구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비록 호적상으로는 구별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상 대등한 지위를 갖는 複數의 처였다고 여겨진다.

81) 『耽羅志』·『風俗』條. “[女多男少]…僧皆作家寺傍 以畜妻子 雖行乞者 竝畜妻妾…”.

82)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이를 寺奴婢가 첫째 '戶'의 말미에 등재되었다(자료의 10-12행)는 점도 많이 작용하였다. 제주도 호적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를 차입자의 대부분이 노비를 기재한 다음 즉 말미에 기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둘째 ‘戶’ : 족원은 처와 子 3명 등 총 4명으로 비교적 適正한 수준이다. 그런데 아들 한 명은 婢妾 소생의 摯子였는데, 寺婢였던 母의 신분·役에 따라 內資寺奴 역을 지고 있었다. 母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자료의 15-16행). 양역인은 戶奴·戶婢 각 2 구씩이 등재되었다. 한편 여기에서도 관계를 표기하지 않은 자가 한 명 보이는데, 奉常寺奴인 石福(44세)이다. 차입자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보다는 戶婢 가운데 적합한 연령자(51세)가 있어 婢夫로 추정하였다.⁸³⁾ 이상, 둘째 ‘戶’의 전체 식구는 10명(戶首 포함)이었다.
- 3) 셋째 ‘戶’ : 셋째 ‘戶’ 또한 총 10명의 식구가 등재되었는데, 족원은 2명에 불과하다. 처가 없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고, 戶首와의 관계를 알 수 없었던 86세의 良女 德卜을 족원으로 본 까닭은 祖父의 妻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에서도 호수의 四祖 기재에 연이어 등재되고 있었다. 德卜에 이어 등재된 자들은 戶奴(2구)·戶婢(4구)와 婢夫, 그리고 奴妻로 추정되는 良女 등 8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부는 百姓을 役名으로 한 金永廻(44세)였는데, 처는 戶婢 連生(45세)이었음이 쉽게 확인된다. 이들 부부의 자가 호노로 등재되면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재하였기 때문이다(자료의 21-22행).

이상, 각 ‘戶’에 등재된 족원과 노비 등을 분석하여 戶내 食口의 규모 및 양상을 살펴보았다. 식구의 규모는 대략 10~2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넷째 戶의 경우처럼 戶首가 노비신분인 ‘戶’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寡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女婿와 子婦로 추정한 바에 따른다면, 한 ‘戶’내에 아들 부부 두 쌍과 딸 부부 두 쌍이 함께 거주하는 복합형태의 가족구성(첫째 ‘戶’의 경우)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처럼 10~20명 규모의 식구가 모두 한 家屋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 특히 17세기 중엽 제주지역의 가옥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精緻한 검토가 자료 분석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개설적 이해에 따르면⁸⁴⁾ 큰 올타리 내의 여러 가옥에서 分居하였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와 그 가족들은 행랑채나 호저집 형태의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본다.

결국 17세기 중엽 제주호적에 등재된 ‘戶’는 다수의 ‘家’(自然家)·‘家族’이 결합한 구조, 이를바 ‘家共同體’ 혹은 ‘世帶共同體’⁸⁵⁾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83) 차입자일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앞의 註記에서와 같은 경우로, 이 寺奴가 호노비를 기재하는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자료의 17-18행).

84) 넓은 집터에 부모와 자식들이 주거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살림을 별도로 하는 방식이 제주도 특유의 주거양식이라 한다(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도서출판 아르케, 1999, 503-523쪽).

85) 李榮薰, 「韓國經濟史 時代區分 試論－戶의 歷史的 發展過程의 觀點에서－」,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V. 맷음말

지금까지, 17세기 중엽 제주지역 호적 자료의 발견을 계기로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현황과 형식상 내용상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세세한 양상들을 재차 열거하는 일은 重言復言이 되겠기에 略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성격·특징 및 활용 가치의 중요성 정도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맷음말에 代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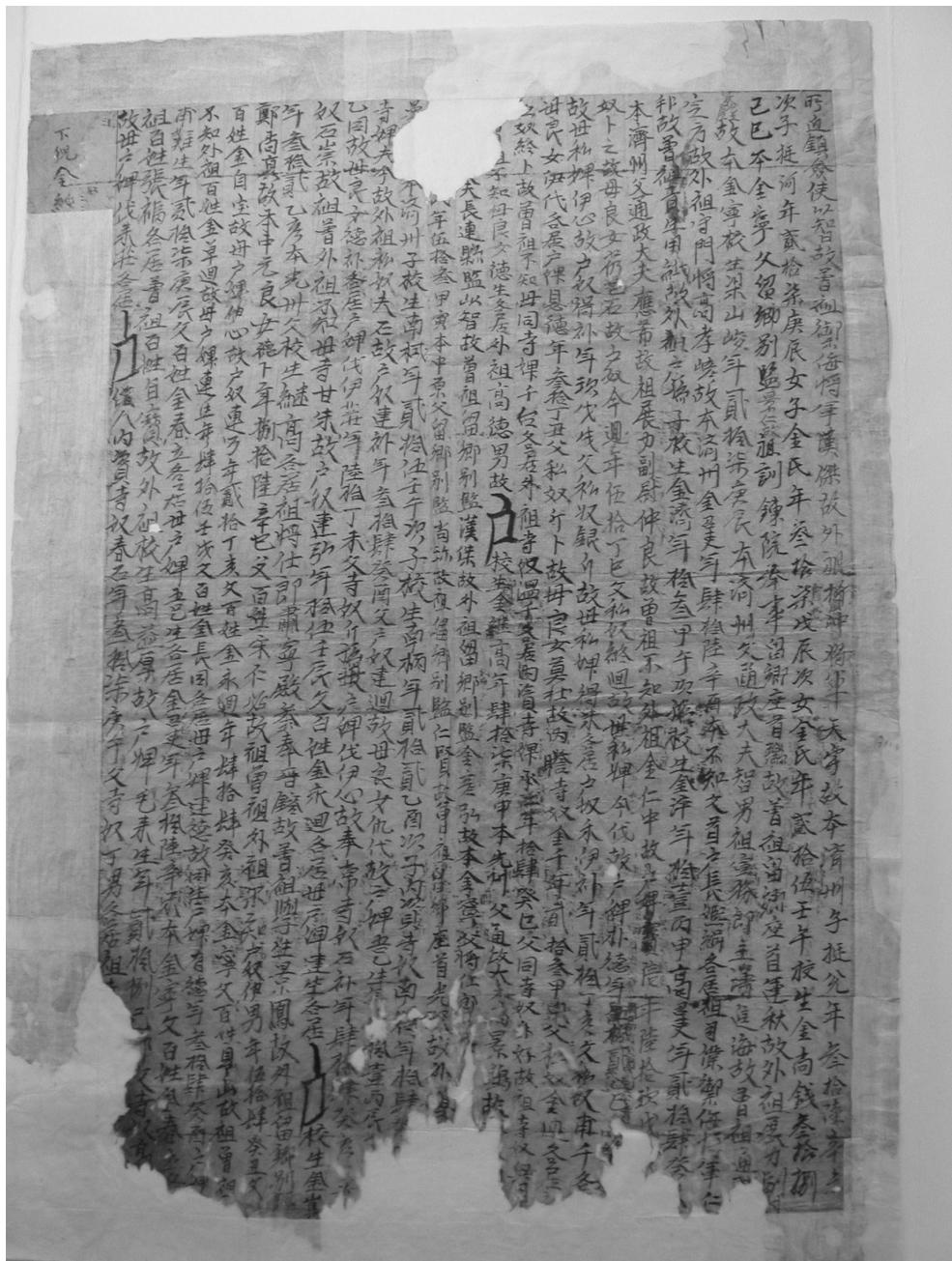
호적대장의 작성 양식이나 기재 내용은, 비록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시기뿐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오가작통법 준행 이후에 작성된 호적은 대체로 定型化된 양식 및 체계가 있었던 반면, 그 이전의 것은 양식 및 체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7세기 중엽 이후에 작성된 호적을 통해서는 호적제도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顯宗 즉위(1659) 이후 호적조사가 정비·강화되기 시작한 데에 따른 과정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肅宗 원년(1675) 이후에 단행된 '五家作統法' 및 '號牌法'의 遵行으로 조선왕조 호적제도가 상황에 맞게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여하튼, 오가작통법 준행 이전에 작성된 호적 자료는 조선시대 호적제도 및 사회상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라 하겠다.

○ 투고일 : 2005년 1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2월 11일.

[사진 자료] : 1666년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 斷片(贍寫本)



참고문헌

자료

- 『萬曆參拾肆年山陰縣戶籍大帳』(160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No.14820).
- 『山陰縣任縣丙午式年丹城戶籍大帳』(1606년: 위 山陰縣戶籍大帳 말미에 附錄).
- 『萬曆己酉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1609년: 서울대 규장각도서관; No.14986).
- 『蔚山府任縣彦陽戶籍大帳』(1609년: 위 蔚山府戶籍大帳 말미에 附錄).
- 『慶尙道山陰縣庚午式年戶籍大帳』(1630년: 서울대 규장각도서관; No.14640).
- 『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1639년: 서울대 규장각도서관; No.27491).
- 『康熙貳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1663년: 서울대 규장각도서관; No.19315).
- 『熙十一年原襄道金化縣壬子帳』(1672년: 미국 하바드대 엔칭도서관; No.TK4049.65/1144).
- 『慶尙道蔚山府壬子式年戶籍大帳』(1672년: 서울대 규장각도서관; No.14999-3).
- 전시도록 :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心齋 金錫翼－』, 국립제주박물관, 2004.
- 『經國大典』(1485년).
- 『典律通補』(1786년).
- 『成冊規式(甲午式)』(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No.12317).
- 『朝鮮王朝實錄』
- 『海東地圖』(18세기 중엽<英祖년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년 영인).
- 『輿地圖書(上, 下)』(18세기 중엽: 國史編纂委員會, 1973 영인본).
- 李元鎮, 『耽羅志』(1653년: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邑誌』 6, 아세아문화사, 1983 영인본에 所收).
- 『濟州邑誌』(18세기 후반<正祖년간>: 『邑誌』 6에 所收).
- 『慶尙道邑誌』(1832년경: 『邑誌』 1, 1982 영인본에 所收).
- 『戶口總數』(178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년 再영인).
- 『扶安金氏愚齋古文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古文書』 8~10, 서울大學校奎章閣, 1992~1994.
- 『박물관 도록－고문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9.
- 朴盛鍾 편, 『東海市 古文書』, 東海文化院, 2002.
- 金錫翼(1885~1956) 편찬, 『光山金氏世譜』, 1942.

논저

-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2)』, 서울大學校 奎章閣, 1982.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繢集(史部 2)』,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改訂版)』,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韓榮國, 「丹城縣戶籍大帳 解題」,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下)』,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梁晉碩, 「解題」, 『濟州河源里戶籍中草(1)』,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2.
- 高昌錫, 「解題」,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I)』,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 高昌錫, 「解題」,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I)』,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 Susan Shin, The Social Structure of *Kumhwa* County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v.1, 1974(「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라는 제목으로 梨花女大 史學科研究 室編譯의 『朝鮮身分史研究』, 附文, 1987에掲載).
- Edward W. Wagner, Social Stratification in Seventeenth Century Korea : Some Observations from a 1663 Seoul Census Register, *Occasional Papers on Korea* v.1, 1974(「17세기 朝鮮의 社會階層—1663년의 서울 北部戶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위 『朝鮮身分史研究』에掲載).
- 崔在錫, 「17世紀初의 同姓婚—山陰帳籍의 分析—」, 『震檀學報』 46·47合, 1976.
- 韓榮國, 「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중심으로—(上·下)」, 『歷史學報』 75·76合·77, 1977·1978.
- 盧鎮英, 「十七世紀初 山陰縣의 社會身分構造와 그 變動」, 『歷史教育』 25, 1979.
- 盧明鎬, 「山陰戶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서울大, 1979.
- 韓榮國, 「‘豆毛岳’考」, 『韓沽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 韓基範, 「17世紀初 丹城縣民의 身分構成—戶籍分析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0, 1982.
-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安承俊, 「16~18世紀 海南尹氏家門의 土地·奴婢所有實態와 經營—海南 尹氏古文書를 中心으로—」, 『淸溪史學』 6, 1989.
- 鄭鉉在, 「丙午式年(1606년) 丹城戶籍에 대한 기초적 검토」, 『慶尙史學』 9, 1993.
- 李榮薰, 「朝鮮前期 名字 考察—16세기 土地賣買名文으로부터—」, 『古文書研究』 6, 한국고문서학회, 1994.
- 조성윤, 「17세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 『鄉土서울』 54, 1994.
- 金東栓,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李榮薰, 「韓國經濟史 時代區分 試論—戶의 歷史的 發展過程의 觀點에서—」,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李榮薰·安承俊, 「1528年 安東府 府北 周村 戶籍斷片」, 『古文書研究』 8, 1996.
- 崔珍玉, 「北部帳戶籍」, 『역사분야 연구논문집 '9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吉田光男, 「一六六三年『漢城府北部戶籍』に見える身分標識と身分・職役」(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日本: 山川出版社, 1997에 所收).

林學成,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口文書에 보이는 '挾戶'의 성격」, 『朝鮮史研究』 7, 1998.

鄭鉉在, 「山陰縣 戸籍大帳에 대한 一研究—丙午式年 戸籍의 수정과 보완—」, 『慶尙史學』 14, 慶尙大, 1998.

李俊九, 「조선중기 編戶白丁의 존재와 그 성격」,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2000.

전형택,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광주 전의이씨 문의공파 종가 소장 고문서의 사례 분석—」, 『朝鮮時代史學報』 15, 조선시대사학회, 2000.

鄭鉉在, 「山陰戶籍(1606年)을 통해 본 奴婢結婚 樣態」, 『慶尙史學』 19, 2003.

林學成,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籍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漢城府 주민의 住居 양상을 究明하기 위한 一試論—」, 『古文書研究』 24, 2004.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金東栓,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하원·회수·월평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9, 2004.

Abstract

A Census Register's Fragment in the 1666's Jeju County(濟州牧) and the Peculiarities of the Census Registers in the 16 · 17th Centuries' Choseon

Lhim, Hagseong*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ensus register and the residential aspect of Jeju-island by the census register' fragment of Jeju County(濟州牧) in 1666. This data is not original but copy of the original data (1908). The value of data is so big because the census register of Jeju-island haven't been discovered ye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s to reclassify the situation of the census registers in the 16 · 17th centuries of Joseon dynasty. Especiall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ensus registers before 1675 when the census register system of Joseon dynasty was outlined by Ogajktong-law(五家作統法). There are written the pattern and examples of register, the residents etc. in the census registers before 1675. These characteristics never find out in the census register after 1675.

Lastly, the Ho('戶') of Jeju-mok census registers of 1666 was consisted of 10~20 person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society of 1666 was communal society of natural house or natural house which combined with natural house and family.

Keyword : the 16 · 17th centuries' Choseon, a census register' fragment in the 1666's Jeju County(濟州牧), census registers, Ogajktong-law(五家作統法)

*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